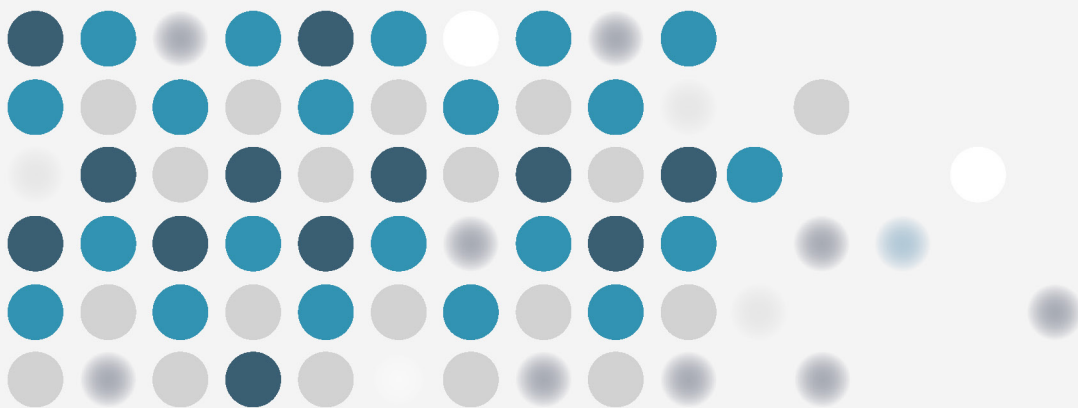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연구 4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김한균 | 이창진 | 조성현 | 박소영 | 백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발간사

본 보고서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 연구」 8가지 세부과제 중의 하나로 기획된 연구성과로서, 향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한 축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을 제시하여, 동북아 지역의 대립과 갈등 구도를 다자간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함으로써 역내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아시아지역 내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동북아지역내 이행 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를 성실히 수행해준 김한균 국제협력센터장과 이창진, 조성현, 박소영, 백혜원 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김진환**

목 차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김한균)	5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7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9
제2장 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의 제정 (이창진·박소영)	11
제1절 범죄통계 국제기준의 의의	13
제2절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13
1.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의 개발	13
2.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 crimes)	16
3. 데이터 수집 도구	18
제3절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 역량 증진	23
1. 국가별 통계기관의 역할	24
2. 역량 증진	24
3.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Centre of Excellence(CoE))의 성공적 모델	25
제4절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	26
1.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CTS)	26
2. 국제적 데이터 저장소 및 범죄 신고	28
제5절 포스트-2015에 따른 안보, 정의, 법치에 대한 점검	30

| 제3장 |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 (조성현) 31

제1절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의 주요 특성	33
제2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	34
1. 분류체계의 조건	34
2. 분류방법	35
3. 세부 분류	37
제3절 ICCS의 이행방안	39
1. 정보공유 홍보 방안 (Information campaign)	39
2. 방법론적 지원방안 (Methodological support)	39
3. 기술적 지원방안	41
4. 조직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41
5. 통계 분류 시스템 관리 방안	42

| 제4장 |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김한균·이창진·박소영·백혜원) 43

제1절 제1차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45
1. 회의 배경과 목적	45
2.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47
3. 통계 개선 대상범죄의 분야	48
4. 국가적·국제적 범죄통계 도구	49
5. 향후 진행방안	50
제2절 ICCS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53
1. 회의 배경과 목적	53
2. ICCS 이행의 의미와 영향	53
3. 각국 실천 계획의 요건	56
4. 이행을 위한 역량과 조건	57

5. 국제적 지원	58
6. ICCS 유지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틀	60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 관련 협의회	61
1. 회의 개요	61
2. 참석 기관의 주요 요지	61
3. ICCS의 이행지원	63
 제5장 결 론 (김한균)	 65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ICCS의 국내적 활용방안 ...	67
2. 살인죄의 분류 적용시안	71
3.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	73
 참고문헌	 79
 Abstract	 81

표 차례

〈표 2-1〉 로드맵의 9가지 목표	15
〈표 3-1〉 ICCS의 대분류	36
〈표 3-2〉 ICCS 세부항목분류	38
〈표 4-1〉 통계정보 개선이 필요한 범죄 분야	49
〈표 4-2〉 추가적 통계정보가 필요한 요소	49
〈표 4-3〉 한국범죄분류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추진계획	62

국문요약

1.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2.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 연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 주요국가와 공동으로 형사사법통계 협력사업의 추진을 기획하면서, 향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지금까지의 범죄통계는 각 나라별로 수집되었으며, 각각의 품질 수준도 다르고 범죄에 대한 기록과 집계 방식도 다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각 나라들의 범죄통계를 서로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이 때문에 범죄분류의 기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종래부터 있어왔다.

4. 1951년 유엔 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범죄에 대한 분류기준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후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of Europe)의 전담반(Task Force)을 설립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UNODC는 실정법규정보다 행위양태에 기초한 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하여,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을 개발하였다.

2 동북아시아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5. 국제비교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ICCS의 목적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통계분석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다.

6. ICCS는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 행위 중심인 사건 기반(event-based) 분류 체계를 지향한다. 동 분류 체계는 범죄사건 기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을 목표로 일반적인 범죄 행위 관련 용어목록을 제공한다. 각 항목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 제공될 것이며, 해당 항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행태들에 관한 설명이 더해질 것이다. 분류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계층화 되어있다.

7. 본 연구는 ICC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고, ICCS의 이행방안을 위한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의의를 살펴보고,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역량 증진, 국제적 자료수집 분석개선의 취지를 개관한다.

8. 범죄분류 국제기준 개발을 위해 UNODC는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소집하였고, ICCS 여러 버전의 대규모 시험 조사가 두 차례 시행되었다. 양 시험 조사는 동 국제 분류를 국가별 차원에서 생산한 통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으며, ICCS의 개발 실현성 및 이행성 모두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9. 제3장에서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을 다룬다. 동 국제기준의 주요특성과, 범죄유형 분류방법, 이행방안을 개관한다. 특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과 관련하여 따르게 되는 분류체계의 조건과 분류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ICC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UNODC가 발표한 정보공유 홍보 방안과 방법론적 지원방안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이를 통해 UNODC가

ICC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어떠한 프레임을 제시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리한다.

10. 제4장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내에서의 국제통계시스템 도입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ICCS의 도입 및 유지를 위해 국제적 지원과 더불어 국내의 제도적·구조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사항을 소개한다. 이에 따라 제1차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관련 협의회 등 그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내용을 정리 분석한다.

11. 본 연구는 지난 2015년 확정공표된 유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였다. 이를 실무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ICCS의 국내 활용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와 동시에살인죄와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국내 범죄 통계가 ICCS의 분류기준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12. 살인죄와 성폭력범죄 두 범죄유형에 대한 ICCS 기준의 적용시도 결과 ICCS상의 개별 범죄행위유형 개념과 현행 실정법상 범죄유형의 차이로 인한 난점이 상당부분 드러난다. 이러한 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로 ICCS를 국내에 도입하게 될 경우 국내 범죄 통계 시스템에 무질서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ICCS의 성공적인 국내 도입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1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서론

김한균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2015년도 「국제 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사업」의 세부과제로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실현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형사사법 협력사업의 하나로 기획되었다. 또한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프로그램 (U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소속 연구기관으로서 14개국 34개 형사정책 연구기관 및 형사사법기관과 연구교류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북아 주요국가와 공동으로 형사사법통계 협력사업의 추진을 기획하면서, 향후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에서 동북아지역 형사사법 협력방안을 발전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역내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다자간 협력 메카니즘을 제도화함으로써, 동북아에서의 평화협력 기반을 구축하며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이다. 또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추진하고, 민간과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다차원적 협력을 지향한다. 특히 비전통 연성 안보 의제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환경·기후변화, 재난 구호, 사이버 스페이스 등 5대 중점분야)에서부터 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취한다.

동북아 지역내 연성의제 중심의 협력에 있어서 형사사법 분야, 특히 형사사법공조

또는 사이버보안은 공동의 현안으로서 평화협력구상의 의제로 적절한 지점이다. 특히 형사사법 통계는 지역내 형사사법 교류에 있어서 기본 언어의 역할을 하므로, 한국형 사정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내 형사사법 통계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역내 교류협력의 기초를 구축함으로써 동북아 협력사업의 기반을 적극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2009년 UNODC는 실정법규정보다 행위양태에 기초한 국제표준 범죄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하여, 2013년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 CCPCJ)의 요청에 따라 UNODC 통계국 및 회원국가 통계기관과 유관정부기관의 협력하에 전문가그룹(Expert Group on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s)이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을 개발하였다. ICCS의 목적은 범죄통계의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임으로써 개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통계분석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있다.

198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통과에 따라 처음 실시된 유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 실태조사(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UN-CTS)는 각국의 범죄통계 및 형사사법제도 운영 실태에 관한 국제사회 차원에서의 데이터수집과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각국의 정의가 다르고 범죄를 집계, 기록하는 방법이 다르며 회원국들의 낮은 응답률로 인해 UN-CTS를 통해 수집된 통계자료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ICCS의 이행을 통해 UN-CTS를 통해 수집된 통계자료의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향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 공식범죄통계 비교가능수준과 지역내 국가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 바 있다. 아시아 지역은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을 갖춘 나라들과 통계 기반시설이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나라들이 공존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행정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범죄피해조사 수행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중요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범죄통계의 전반적 질 향상에 대한 필요 외에도 부패, 사이버범죄, 조직범죄 등 특정 분야 관련 통계 정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지역 내 범죄통계 발전을 위해 지역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일본, 중국 등 동북아 주요국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실로 국제적 지역적 형사사법 협력의 취지에 상응한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동북아지역내 이행 협력사업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대상과 체계

본 연구는 2015년 확정공표된 유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제적 지역적 형사사법협력 과제로서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의의를 살펴보고,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역량 증진, 국제적 자료수집 분석개선의 취지를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이행방안을 다룬다. 동 국제기준의 주요특성과, 범죄유형 분류방법, 이행방안을 개관한다.

제4장에서는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제1차 형사사법 통계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관련 협의회 등 그동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및 사업내용을 정리 분석한다.

제2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S)의 제정

이창진·박소영

제2장

UNODC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ICCIS)의 제정

제1절 범죄통계 국제기준의 의의

범죄 분류의 기준 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종래부터 있어왔다. 1951년 유엔 사회위원회(the Social Commission of the United Nations)가 범죄에 대한 분류기준의 중요성을 역설¹⁾한 이후로 이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그 결과는 미미하였다. 2009년에는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Economic Commission of Europe)의 전담반(Task Force)을 설립하며 새로운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이 전담반은 유럽통계기관장회의(Conference of European Statisticians)의 감독 하에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행위 기술에 기반을 둔 범죄 분류 틀 개발의 실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본 전담반은 최초의 국제 범죄 분류 기본 틀을 개발하였으며, 이것은 2012년 6월에 열린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제60차 세션에서 승인받았다.²⁾

제2절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 개발

1. 범죄통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방법론의 개발

2012년 3월,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UNSC) 제 43차 세션에서는 범죄통계의 수집, 배포, 분석에 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³⁾ 그 결과

1) 이러한 권고사항의 세부 내용은 E.CN.5/233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ECE/CES/83)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cms.unov.org/LLSULinkbase/ContentTree.aspx?nodeID=217>

UNSC는 멕시코통계지리연구원(INEGI)⁴⁾과 UNODC에게 제44차 세션에서 범죄통계를 더욱 발전시킬 로드맵(road map)⁵⁾과 UNSC와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CCPCJ)를 위한 협력기제를 제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⁶⁾ UNSC는 또한 이 두 기관이 통계목적 범죄분류 국제기준 개발에 대한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는 UNSC 제43차 세션과 CCPCJ 제21차 세션의 논의⁷⁾를 이어받아 정책개발을 위한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의 질과 가용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결의안 2012/18⁸⁾을 채택했다. 다시 말해 해당 로드맵은 양 위원회의 요청과 ECOSOC의 결의안을 실현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항목화된 행동들을 점진적(gradual)이고 조직적(coordinated)인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함이다.

동 로드맵은 다음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범죄분류 국제기준의 개발. 둘째,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 crimes)에 대한 통계도구 개발. 셋째, 범죄피해조사 장려. 넷, 개별 국가의 범죄통계 시스템 강화.

범죄분류 국제기준 개발을 위해 UNODC와 INEGI는 해당 기본 틀에 대하여 2012년 7-9월 제1차 시험 조사를 시행했다. 해당 시험 조사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의 16개 지원국⁹⁾이 참여하였고 매우 고무적인 결과를 산출해냈다. 이를 통해 범죄 국제 분류가 실현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험 조사 참가국들은 각 국에 현존하는 범죄 데이터를 국제 범죄 분류 틀에

3) 해당 세션은 멕시코통계지리연구원(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INEGI)이 발제한 보고서에 기반을 둔다.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2/2012-3-CrimeStats-E.pdf>

4) 멕시코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으로써 멕시코의 국가 통계 및 지리 정보 시스템의 조정을 맡는다. 1983년 1월 25일에 대통령령으로 창립됐다.

5)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N12/656/65/PDF/N1265665.pdf?OpenElement>

6) 이에 대한 세부 내용(E/2012/24/-E/CN.3/2012/34, chap. I.B)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unstats.un.org/unsd/statcom/doc12/2012-Report-E.pdf>

7)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E/2012/30-E/CN.15/2012/24 및 Corr.1과 2, chap. I.B)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daccess-dds-ny.un.org/doc/UNDOC/GEN/V12/537/43/PDF/V1253743.pdf?OpenElement>

8) 해당 결의안 전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unodc.org/documents/commissions/CCPCJ/Crime_Resolutions/2010-2019/2012/ECOSOC_Resolution-2012-18.pdf

9) 제1차 시험조사에 참여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호주,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멕시코, 네덜란드, 필리핀, 폴란드, 스위스, 미국, 웨일즈.

맞게 구성할 수 있었으며, 범죄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했다. 해당 시험 조사 관련 전문가들은 2012년 10월에 모임을 갖고 국제 분류들의 수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대분류(level 1) 범주에 관한 수정 목록과 함께 하위분류에 관한 골격을 마련했다. 이후 단계에서는 다양한 범죄 정보 체계를 아우를 수 있도록 폭넓은 자문 과정이 필요함도 확인하였다.

본 로드맵은 UNSC에 2015년까지 최종초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9개의 목표(objectives)와 각 목표에 따른 조치를 제안하고 그 기대 결과도 함께 담고 있다. 9개 목표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1〉 로드맵의 9가지 목표

목표 (Objective)	내용
목표 1	통계목적의 범죄 국제 분류를 생산하여 2015년에 UNSC에 제출
목표 2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의 측정을 위한 정보수집방식 및 통계 기본 틀 개선
목표 3	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개선되고 비교 가능한 통계적 지표 ② 행정상(administrative) 범죄 통계의 범위, 정확도, 비교성 개선
목표 4	①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국제적 전문 지식(know-how)의 통합 ② 기업부문에서 범죄피해조사 실시를 장려 ③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인식 제고를 통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점 차이를 조 명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지식 확장
목표 5	민간부문 그리고/또는 정부기관과 같은 비전통적 범죄데이터 원천(source)을 활용한 지식 증대
목표 6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에 있어 젠더 관련성 개선
목표 7	① 범죄 관련 국가수준의 통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책임자들 간 국내적 협력 강화 ② 범죄 통계의 조정 및 행정상 정보원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의 이행에 관한 국가적 통계 기관의 역할 증대 ③ 범죄 통계의 생산, 배포, 분석을 위한 국가적 역량 증진 ④ 범죄 통계를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 설립
목표 8	국제 수준에서 개별 국가의 범죄 데이터의 가용성 및 질 향상
목표 9	①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국제적 데이터세트(data set)의 지리적 및 주제별 범위 개선 ②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세계적 통계 분석 제공 ③ 2015년 이후 개발 기본 틀에 대한 논의를 알리기 위한 보안 감독 및 사법과 법치에의 접근을 위한 도구 제공

ICC를 위한 동 로드맵의 실효적인 이행을 위해 ECOSOC은 2013년 7월 25일 결의안 2013/37(정책개발을 위한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통계의 질과 가용성 개선)¹⁰⁾을

승인하였다. 결의안 2013/37은 앞선 결의안 2012/18과 취지를 같이하여 동 로드맵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기술적 지원 및 회원국의 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12년 6월에 열린 유럽통계기관장회의 제60차 세션에서 승인받은 문서인 “통계 목적의 국제 범죄 분류를 위한 원칙 및 기본 틀(Principles and framework for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은 유엔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 UNSD)과 UNODC가 2013년 2월 비엔나에 소집한 전문가그룹이 토의하고 검토한 결과다. 국제 범죄 분류 초안에 대한 세계적 협의와 시험 조사는 2013년 9월에 시작되었으며, 모든 회원국이 해당 시험 조사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다. 그 중 50개국이 2014년 2월 및 3월의 시험 조사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고, 해당 조사를 시행한 국내전문가들의 회의가 2014년 5월에 열렸다. 동 전문가 회의에서는 시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UNSC와 CCOCJ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국제 분류 초안을 마무리 지었다.

이처럼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세 차례의 자문회의를 소집하였고, ICCS 여러 버전의 대규모 시험 조사가 두 차례 시행되었다.¹¹⁾ 양 시험 조사는 동 국제 분류를 국가별 차원에서 생산한 통계에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행되었으며, ICCS의 개발 실현성 및 이행성 모두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2년 8월 UNODC와 UNSD는 ICCS의 최종안을 회원국과 유관 기관들에 배포하였다.

2. 측정이 어려운 범죄(difficult-to-measure crimes)

다양한 비전통적 범죄들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횡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별 및 국제적 법제¹²⁾가 마련되었다. 초국가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부패,

10) https://www.unodc.org/documents/commissions/CCPCJ/Crime_Resolutions/2010-2019/2013/ECOSOC/Resolution_2013-37.pdf

11)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 9쪽.

12) 이에 관련된 국제법적 장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유엔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부속의정서(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its related Protocols), 여성 및 아동 인신매매 방지 의정서(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이민자 불법운송 방지 의정서(the Protocol against the Smuggling of Migrants by Land, Sea and Air), 총기류 불법제조 및 거래 방지 의정서(the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유엔 부패방지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멸종위기에 처한 야

자금세탁, 밀입국, 인신매매, 환경범죄 등은 본질적으로 초국가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 또는 국제적 공동 전략 구상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잡한 양상의 범죄들을 측정하거나 범죄발생 수준이나 경향에 맞는 통계자료 수집에 필요한 국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큰 도전과제다. 이러한 비전통적 범죄 형태들의 특징은 매우 낮은 적발비율(detection rate)이다. 이는 유관 당국에 신고된 사건에 기반을 둔 통계가 해당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신고기반 통계는 해당 범죄 사건의 규모를 심각히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평가된다.

예를 들어, 살인이나 폭행과 같은 조직범죄의 경우, 대부분 쉽게 감지되며 전통적인 범죄 정보 시스템을 통해 기록된다. 그러나 그 외 형태의 조직범죄는 많은 경우 신고되지 않거나 당국의 감시망에 잡히지 않는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두려움 또는 조직범죄 그룹이 그 사회에 잘 동화된 결과일 수도 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직범죄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려면 전통적인 정보수집 시스템을 넘어서는 도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복잡한 형태의 범죄에 있어 공식 정보원의 부족이라는 통계정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NEGI-UNODC는 다음의 네 가지 전략을 갖춘 통계정보 수집기준의 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목표 2 (측정이 어려운 범죄의 측정을 위한 정보수집 방식 및 통계 기본 틀 개선)를 통해 잘 드러난다.

- 전략 1) 복잡한 범죄의 더 나은 측정을 위하여 기존의 데이터수집 도구개선
 전략 2) 다른 정보원은 수집하지 못하는 범죄 구성요건을 측정하는데 있어 새로운 정보 수집 도구 개발
 전략 3) 암수범죄의 규모 측정을 위해 실증적 데이터와 과학적 조사에 기반을 둔 표준 추산 방식 개발
 전략 4) 복잡한 범죄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측면/주제를 묘사하고 이러한 측면이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는 통계 데이터와 지표를 식별하기 위한 통계적 기본 틀 개발

측정이 어려운 범죄 유형 중 하나인 부패의 경우, ICCS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그 측정에 있어 진척이 있었다. 이는 일반 대중과 민간 기업이 뇌물수수(bribery)

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에 대해 갖는 인식(perception)이 아닌 경험에 초점을 둔 조사의 실행으로 가능했다. 특히 2013년에는 UNODC가 부패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다수 국가들을 지원하였으며, 설문자(interviewer)를 위한 모델 조사 설문 및 지침을 개발했다.

3. 데이터 수집 도구

가. 범죄 관련 행정자료

범죄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 통계 데이터 수집방식 관련 역량의 증진은 본질적인 사안이다. 사법행정 통계자료는 경찰, 검찰, 법원, 행형기관의 네 기관에서 주로 생산¹³⁾되며, 이 기관들은 범행의 시작과 종료 이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관장한다.

이러한 형사사법절차 내 다양한 정보원들 중, 범죄 기록/적발에 관한 경찰 데이터가 범죄 사건과 가장 긴밀하며 따라서 범죄 수준 및 패턴을 추정하는데 많이 사용된다. 범죄 측정의 그 정확도는 일반적으로 법 당국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 범죄를 탐지하는 당국의 역량, 범죄 신고 기록 및 집계 관련 실무라는 세 가지 요소에 의존하며, 세 번째 요소만이 통계 범주 내에 포함된다.

행정상 범죄 통계의 주요한 도전 과제는 다음 다섯 가지로 확인되었다. 첫째, 사건 기록의 불완전성(대부분 디지털화된 시스템의 부재에 따름). 둘째, 형사사법 기관들 간 기록된 정보의 질 차이. 셋째, 형사사법 기관들 간 범죄 기록 기준의 일관성 미비. 넷째, 비전통적 범죄를 기록에 있어서 행정기록상 부적합성. 다섯째, 초국가범죄 측정의 한계로서 국제적 연관성(correlations) 및 비교성 부재.

형사사법 통계시스템 개발을 위한 매뉴얼¹⁴⁾(Manual for the Development of a System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은 조직(organizations)의 구성 및 통계 원칙들에 대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한 질 좋은 통계를 생산해 내도록 돕는다. 그러나 위 매뉴얼의 통계 원칙들의 실행이 도전과제인 다수의 국가들도 존재하는 실정이다.

13) 연합국가의 경우, 법 집행과 형사사법이 주(state)와 연방정부(federal) 수준으로 나뉘짐에 따라 복잡성이 증가한다.

14) 유엔이 출판하며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본 매뉴얼의 세부 사항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unstats.un.org/unsd/pubs/gesgrid.asp?id=293>

여러 가지 도전과제들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시스템을 정보원으로 하는 통계는 여전히 유용하다. 다만 국가별 정보 생산이나 국제적 비교성 증진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통계 기준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는 로드맵 목표 3 (① 형사사법시스템의 기능에 관한 개선되고 비교 가능한 통계적 지표; ② 행정상 (administrative) 범죄 통계의 범위, 정확도, 비교성 개선)에 잘 드러난다.

ICC의 목표는 범죄 통계 생산이다. ICC는 법률 조문이 아닌 범죄 행위 중심인 사건 기반(event-based) 분류 체계를 지향한다. 동 분류 체계는 국가별 법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범죄사건 기술을 통해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 생산을 목표로 일반적인 범죄 행위 관련 용어목록을 제공할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사실적 기술이 제공될 것이며, 해당 항목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행태들에 관한 설명이 더해질 것이다. 분류체계는 위계적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계층화 되어있다.

나. 범죄 관련 표본조사

표본 조사는 피해자의 범죄 경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행정 데이터를 보완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표본 조사는 전형적으로 재산 및 폭력 범죄 등 전통적인 범죄 형태와 같이 잘 알려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 확산,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징, 법 당국에 신고된 범죄 및 신고 되지 않은 범죄(“암수범죄”), 치안활동에 관한 안전도 및 만족도에 관한 인식에 관한 데이터도 산출해낸다.

범죄피해조사 시행방법론은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범죄피해조사 매뉴얼(Manual on Victimization Surveys)¹⁵⁾이 범죄피해조사 시행에 관한 전 과정에 관한 세세한 지침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참고자료이다. 범죄피해조사 시행에 대한 그간 축적된 우수사례(best practices)가 존재하는 한편, 범죄피해조사의 설계와 활용에 관한 현안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주요한 요소들이 있다.

첫째, 공식통계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조사의 더욱 폭넓은 실행이 장려된다. 이를 위해선 기술적 지원의 제공, 교육과정 실행, 온라인 교육 도구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국내 통계기관들 간의 컨소시엄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방법론은 토론

15) https://www.unodc.org/documents/data-and-analysis/Crime-statistics/Manual_on_Victimization_surveys_2009_web.pdf

및 개발, 세계 곳곳의 발전들을 기록하는 가상도서관(virtual library) 설립, 그동안 축적해온 연구 및 우수사례 그리고 국내 통계기관들이 보유한 자료에의 손쉬운 접근을 이룰 수 있다.

셋째, 범죄피해조사 매뉴얼을 보완하는 새로운 범죄피해조사의 형태/모듈의 설계 및 (범죄)행위에 대한 국제적 표준 생산이다. 이를 위해 부패 또는 사이버범죄와 같이 조사 참가자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특정 범죄 형태를 다루거나 기업과 같은 다른 주체를 대상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특히 기업대상 범죄피해조사는 그 특유의 방법론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1990년대부터 시작됐지만¹⁶⁾ 오직 몇 개의 국가적 조사만이 시행된 실정이다.

범죄피해조사 외에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적인 관점은 자기보고식 비행 조사(self-reported delinquency surveys)를 통해서도 수집가능하다. 동 조사의 초점은 가해자로서 범죄 또는 비행의 개인적 경험에 있다. 이는 범죄학 연구에서 하나의 전통으로 학교와 같이 전형적인 청소년 환경에서 청소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비행과 범죄행위 간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불법적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정보를 밝혀내는 것은 동 조사에 대한 잘 알려진 방법론적 어려움이다.

범죄피해조사(기업대상 포함)와 자기보고식 비행조사 등 범죄 표본 조사의 개선에 있어 본 로드맵은 목표 4 (①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국제적 전문 지식(know-how)의 통합, ② 기업부문에서 범죄피해조사 실시를 장려, ③ 자기보고식 조사에 관한 인식 제고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다른 관점 조명함으로써 범죄 지식 확장)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관한 조사는 국내적 관행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INEGI는 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측정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출판했다.¹⁷⁾ 동 연구는 국가별 및 국제적 수준의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이론적, 방법론적 기여들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의 다각적 측면들을 고려함으로써 범죄 현상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이를 적절히 측정하

16)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이태리, 코소보, 멕시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마케도니아가 그 예이다. 그 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도 유럽연합 차원의 기업대상 범죄피해조사의 실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적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17)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for policy development, 5쪽.

기 위한 방법론의 개발 및 미래 연구를 위한 길을 닦고자한다. 나아가 유럽연합(EU)와 소수 국가들은 기업 범죄 대상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다. 그 밖의 범죄 관련 자료원(date sources)

경찰기록, 범죄피해조사 등 전통적 자료원 외에도 범죄사건에 관한 정보는 다른 기록 시스템을 통해 수집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청구 등록시스템을 통한 재산범죄 관련 정보, 금융거래시스템을 통한 불법자금흐름에 관한 간접적 지표들, 인터넷보안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특정 사이버범죄 형태에 관한 정보, 공중보건기관의 사인(死因) 등록시스템을 통한 고의 살인에 관한 추가적 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원은 특정 범죄 형태에 있어 사용 가능한 정보의 양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고 현존하는 데이터의 범주를 개선하는 중요한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성은 서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며, 그 사용에는 엄격한 기준과 기밀정보보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위성사진 및 원격감지기술의 활용은 범죄 자료의 전통적 자료원을 보완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법이다. 동 접근법은 남아시아 지역의 양귀비 및 안데스산맥 지역의 코카인 등 불법작물재배 평가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또한 불법 벌목 및 채광, 폐기물 투기 등 특정한 물질적, 지표적 외연을 지니는 환경을 대상 범죄 활동에서와 같이 비슷한 특징을 지닌 범죄에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로드맵 목표 5 (민간 부분 그리고/또는 정부기관과 같은 비전통적 범죄데이터 원천(source)을 활용한 지식 증대)이 제시되었다.

이를 위해 중남미지역 형사사범 통계협력센터(UNODC-INEGI Centre of Excellence (CoE))는 증거기반 지식 생산을 위한 기본 틀을 개발 중에 있다. 그 목적은 중남미·카리브 해 지역의 조직범죄 현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이는 범죄 조직의 구성, 경제적 활동, 정부의 개입, 촉진 요소 및 저해 요소, 조직범죄가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데이터의 체계적 수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라. 성인지적 범죄통계

범죄가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의 실행 그리고 범죄자의 소추 및 유죄선고에서도 성(性)에 따른 편차가 존재한다. 대부분 범죄 형태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거의 남성이지만, 특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의 경우와 같은 특정 범죄에서는 여성 피해자가 훨씬 많다. 이에 더하여 전통적인 성역할과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태도는 형사사법접근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을 높인다.

유엔양성평등및여권신장기구(United Nations Entity for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UN-Women)의 “세계 여성의 진보: 정의 추구(2011-2012)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In Pursuit of Justice”(2011-2012))에 따르면 여성은 사법시스템을 통한 정의실현을 보장받기 어려우며, 특히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하다.¹⁸⁾

성인지적 사법접근을 실현하기 위한 첫 단계에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에 젠더 연관성을 개선하는 것과 범죄의 실행이나 범죄 피해자에 대한 남성과 여성의 다른 역할을 더욱 잘 반영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에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함으로써 특히 전통적 성역할이나 양성불평등에 뿌리를 두는 양성 차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피해자와 가해자에 관한 모든 데이터의 성별 분석 보장. 둘째, 성차(性差)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거나 형사사법 접근에 있어 성차별이 존재하는 영역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및 배포 증진.

그러나 많은 경우 체포, 소추, 유죄판결, 구금에 관한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정보는 성별에 따른 개별변수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와 같은 범죄의 상황 배경적 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성별 유인(motivation)을 갖는 범죄 측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결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법론적 지침이 필요하다. 방법론적 가이드라인을 통해 범죄통계를 더욱 성인지적으로 만들고, 범죄 및 형사사법의 전통적인 지표들과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주류화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18) UN-Women, Progress of the World’s Women (2011-2012),
<http://www.unwomen.org/~media/headquarters/attachments/sections/library/publications/2011/progressoftheworldswomen-2011-en.pdf>

예방정책의 실효의 높이고 사법접근에 대한 양성평등이 보장한다. 이는 목표 6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에 있어 성(性)관련성 개선)에 잘 드러나 있다.

이를 위해 UN-CTS는 성별과 연령의 개별변수를 추가 데이터로 포함하여 범죄와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내 성별차이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UNSD는 범죄와 폭력 관련성 인지도 개선을 목표하는 여성폭력 관련 통계 생산 지침(Guidelines for Producing Statistics on Violence against Women: Statistical Surveys)¹⁹⁾을 2013년 8월에 출판하였다. 동 지침은 여성폭력의 평가범위, 발생 빈도 및 정도와 관련하여 도움을 준다.

제3절 범죄자료 생산 및 활용 역량 증진

UNSC 제43차 세션에서 INEGI의 보고에 따르면, 범죄 관련 통계데이터의 생산은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개발 초기단계에 있다. 그 이유는 관련 기관들 간 부실한 협력관계, 통계표준의 부적절한 실행, 범죄피해조사를 개발 및 이행하는데 있어 부족한 역량 등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국내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 시스템이라 지칭되는 대상은 정작 통일된 개념과 절차를 갖춘 통계시스템의 특징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자료의 생산과 공공전파 개선의 첫걸음은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통계절차의 조정을 위한 국내적 기제를 구축 또는 강화하는 것이다.

범죄 자료 생산 및 배포에 관한 역량의 증진을 위하여 목표 7 (① 범죄 관련 국가수준의 통계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 범죄 및 형사사법통계 책임자들 간 국내적 협력 강화, ② 범죄 통계의 조정 및 행정상 정보원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조사의 이행에 관한 국가적 통계 기관의 역할 증대, ③ 범죄 통계의 생산, 배포, 분석을 위한 국가적 역량 증진, ④ 범죄 통계를 지원하는 지역별 거점 설립)이 제시되었다.

19) http://unstats.un.org/unsd/gender/docs/Guidelines_Statistics_VAW.pdf

1. 국가별 통계기관의 역할

국가적 차원의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형태와 기제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르게 될 것인 반면, 국가별 통계기관은 국내 통계시스템의 조정자로서 그리고 통계 기준과 데이터의 질의 장려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개별 국가의 통계기관은 범죄통계 영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관들과 함께 범죄관련 국내 통계시스템 구축을 진작하여 다음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

- 첫째, 표준 개념과 용어의 사용, 국가별 범죄 통계 기준 개발
 - 둘째, 기록 관련 관행 및 데이터 가공방식에 관한 정보 교환, 이것의 점진적 표준화
 - 셋째, 데이터의 전파 및 공유 관련 기제
 - 넷째, 통계 데이터의 공동 배포 및 출판
 - 다섯째, 국가별 통계 계획 및 전략에 있어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의 포함
 - 여섯째, 범죄 및 형사사법 데이터에 기반을 둔 분석적 자료 생산 역량
 - 일곱째, 범죄 통계의 질과 연관성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연구기관, 학계, 형사사법 기관 외 정부 부문을 포함하는 추가적 데이터 사용자들과의 협의
- 여러 나라에서 국내 통계기관들이 범죄통계분야에서 적극적이지 못한데 반하여, 범죄 관련 국내적 통계시스템은 이러한 기관들을 통하여 크게 강화될 수 있다. 이 기관들이 각각의 고유한 기술적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국제표준의 이행을 장려하며, 질 좋은 자료를 보장하기 때문이다.²⁰⁾

2. 역량 증진

역량제고 프로그램은 범죄통계 향상에 있어 중요한 요소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ADB) 등 지역기구들은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20)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국가적 차원에서 생산되는 범죄통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 국제사회가 통일된 접근방식을 제공하고 다음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에 관한 일관된 표준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미 진행 중인 활동들의 추가적인 강화 및 조정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피해조사 장려(표적 인구 및 기업)

둘째, 국제범죄분류와 일치하는 국가별 통계분류 장려

셋째, 비전통적 범죄를 포함하는 행정통계 개선

넷째, 범죄통계 생산에 참여하는 국내기관들을 아우르는 국가적 조정 기제에 대한 지원 제공

다섯째, 국제통계기준의 이행 조성을 위한 개선된 범죄 통계 절차의 장기 지속성 범죄 데이터의 생산 및 배포를 위한 국가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지원과 관련하여, UNODC는 UN-CTS의 완성을 위해 국가들에게 자문 서비스와 직접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완성 과정 중 국가들에게 제공하는 지속적인 지원 외에도 UNODC는 처음으로 화상 회의를 통하여 특수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다. UNODC는 조사 방법론과 조사 실행에 관련한 직접적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2013년에는 동 사무소가 아프가니스탄, 이란, 서 발칸반도 내 국가들 또는 지역에 이러한 직접적 기술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당 당국들은 성공적으로 부패 조사를 이행할 수 있었고 분석적 보고서를 생산해냈다. 그리고 이라크와 필리핀 대상으로 범죄피해조사 이행 관련 지원을, 나이지리아 대상으로 국가 부패 조사의 설계와 이행을 위한 지원도 제공했다.²¹⁾

3.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Centre of Excellence(CoE))의 성공적 모델

거버넌스, 범죄피해, 치안, 사법 관련 통계 정보를 위한 UNODC-INEGI CoE(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INEGI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al Information on Governance, Victimization, Public Security and Justice)²²⁾는 2010년 말에 설립되었으며, 데이터 수집과 범죄통계 분야에서 통계정보의 분포 및 분석

21) 위와 동일

22) http://www.cdeunodc.inegi.org.mx/unodc_en.html

향상을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동 CoE는 짧은 시간 안에 범죄 통계 관련 지역적 및 국제적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다수의 기획을 주관하는 역할을 맡아왔으며, 중미·카리브 해 지역의 국가들을 성공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CoE)는 다른 지역에서 본받을 수 있는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지역거점들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구축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국가적 범죄 통계 시스템의 다양한 행위자를 염두에 둔 각 국의 특수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는 국가기관 고위급 및 중간급 공무원을 위한 훈련 과정을 제작했다. 동 훈련 과정은 멀티미디어 도구와 판례 연구를 포함한 훈련 자료와 함께 범죄피해조사의 계획 및 개발, 설문지 설계, 조사 샘플링(sampling), 현장연구, 품질관리, 데이터 처리 및 분석을 포함한 훈련 매뉴얼로 구성된다. 나아가, 중남미지역 형사사법 통계협력센터는 범죄피해조사 관련 지식 데이터베이스(database)를 구축하여 유관 문서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다. 단일한 소개플랫폼(single presentation platform)을 통해서 국가별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다양한 방법적, 분석적 문서를 온라인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접근성과 배포범위를 개선시키는 결과를 낳았다.²³⁾

제4절 국제적 자료 수집 및 분석 개선

1.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CTS)

UNODC는 유엔 시스템 내에서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통계에 관한 중심적 기관이다. 동 사무소는 범죄동향 및 형사사법체계운영실태 조사(United Nations Survey on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UN-CTS)를 통해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세계적인 데이터 수집을 관리한다. UN-CTS는 1970년대에

2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시작되었으며, ECOSOC과 총회가 승인한 다수의 결의안을 통해 지지받고 있다.²⁴⁾

회원국에 매년 송달되는 동 조사의 설문지는 경찰, 검찰, 법원, 행형, 범죄피해 조사의 다섯 가지 주요 부문과 매년 바뀌는 두 가지 전문화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UNODC의 웹사이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배포되며, 국제 살인 연구(Global Study on Homicide)와 같은 분석보고서를 위해 사용된다.

데이터 수집 기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 응답률 수준은 여전히 불충분하다. 매년 평균 50%미만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동 조사의 설문지가 배포되는 범주는 경찰, 검찰, 법원, 행형 등 다수의 국가별 기관들을 아우른다. 동 조사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ECOSOC은 그 결의안 2012/18²⁵⁾을 통해 회원국들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다양한 기관들의 조정자로 기능할 수 있는 중심기관을 지정해 줄 것과 해당 자료의 질과 완결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요청은 회원국들의 응답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1개국만이 중심기관을 지정하였으며, 그 중 31개국은 해당국의 정부통계기관을 본 조사를 위한 조정자로 선정하였다.²⁶⁾

동 조사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설문지 환송을 장려하는 UNSC와 CCPCJ의 활발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응답률이 특히 저조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역기구들과의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별 통계기관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국가 수준의 조정의 향상을 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동 조사로 국가들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은 중기적(mid-term)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인 반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적 비교성을 개선하는 사안은 장기적 전략을 요한다. 그리고 그 장기적 전략의 첫째 요소는 국제 범죄 분류의 개발 및 점진적 이행이다. 이를 위하여 본 로드맵은 목표 8 (국제 수준에서 개별 국가의 범죄 데이터의 가용성 및 질 향상)을 설정했다.

24) 총회 결의안 65/232 및 66/181, ECOSOC 결의안 2009/25 및 2012/18

25)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for policy development.

26) 국내의 통계기관을 동 조사의 중심기관으로 선정한 나라들의 90%가량은 유럽에 위치한다.

2. 국제적 데이터 저장소 및 범죄 신고

UN-CTS를 통해 수집된 범죄 정보는 국가들의 참여도 면에서 불완전하며 국제적 비교성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UNODC는 2011년에 고의 살인(intentional homicide)에 관한 국제 자료 저장소를 개설하였으며, 이는 가용성, 포괄성, 비교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원 중 하나이다.²⁷⁾ 살인 자료집은 207개의 나라/영토를 아우르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이에 활용되는 정보원은 국내 및 국제 형사사법이나 공중보건 시스템에서 유래한다.²⁸⁾

살인에 관한 충실한 데이터 세트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범죄 측정을 위해 양적(quantitative) 참조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살인이 폭력 범죄에 대한 훌륭한 대표적(proxy)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도 다른 범죄 형태 파악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범죄들도 똑같이 국제적 범위에서 측정될 필요가 있다. 행정상 정보원에서 생산되는 다른 범죄 형태에 관한 정보의 가용성 및 비교성의 개선과 함께, 범죄피해 조사, 국제적 분석을 위한 일련의 국제적 데이터, 범죄 경향에 관한 보고서의 점진적인 확장은 점차적으로 향상되고 증가하게 되어있다.²⁹⁾

수많은 정부간 기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UNODC는 2011년 살인 통계 데이터세트에 기반을 둔 국제 살인 연구(Global Study on Homicide) 초판을 발행했다. 그리고 동 연구가 살인 통계 데이터세트의 배포와 정책결정 관련 통계정보를 추출에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의 통계적 분석에 기반을 둔 보고서의 정기적 간행은 범죄 관련 국제적 데이터세트의 이용에 있어서 사용자들에게 더욱 손쉽고 연관성 있게끔 중요한 기여를 한다. 이러한 노력은 현존하는 데이터의 질과 범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과정을 증진할 수 있다.³⁰⁾

2015년 이후의 개발의제는 안보, 사법 접근성, 법치를 중심으로 논의되었으며, 이

27) 형사사법시스템과 보건정보시스템을 정보원으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살인의 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살인에 대한 가용 데이터를 향상시키며 이는 다른 범죄 형태에는 없는 측면이다.

28)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29) 위와 동일

30) 위와 동일

러한 주제가 새로운 개발의제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가별 및 국제적 수준에서 세부 목표와 지표를 위한 적절한 기준선(baseline)을 세우는데 필요한 통계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통계기관, 형사사법기관, 지역 및 국제기구, 연구소, 학계의 통계전문가 및 분석가로 구성된 전문가그룹 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관련 회의에서는 안보, 사법 접근성, 법치 영역과 관련된 개념, 통계 방식, 데이터, 지표에 대해 토의해야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의의 결과는 2015년 이후 개발 틀을 형성하는데 참여한 행위자와 그에 관련된 절차의 일부에 반영될 수 있다.³¹⁾

국제적 자료 수집과 분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목표 9 (① 범죄 및 형사사법 관련 국제적 데이터세트의 지리적 및 주제별 범위 개선, ② 범죄 및 형사사법에 관한 세계적 통계 분석 제공, ③ 2015년 이후 개발 기본 틀에 대한 논의를 알리기 위한 안보 감시 및 사법과 법치에의 접근을 위한 도구 제공)에 잘 나타나 있다.

이를 위하여 고의살인에 관한 통계 정보의 수집 및 배포가 더욱 강화되었다. 219개의 나라/영토를 대상으로 살인 관련 최신 수치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UNODC의 살인 통계 데이터세트는 성(性) 개별변수를 포함한 피해 데이터와 함께 인구밀집도 상위 도시들에 일어나는 무기에 의한 살인 또는 살인의 비율 같은 추가적 데이터를 포함한다.³²⁾ 이에 더하여, UNODC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고의살인에 관한 국제적 정보원의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한다.³³⁾

31)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for policy development.

32) 이에 대한 세부정보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unodc.org/gsh/en/data.html>

33) Economic and Social Council,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improving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statistics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for policy development.

제5절 포스트-2015에 따른 안보, 정의, 법치에 대한 점검

포스트-2015 개발의제에 관하여는 안보, 사법의 법치와 관련된 주제들이 포함될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이렇게 논의된 주제들 가운데,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으로 펴낸 보고서에서 새로운 개발 기본 틀 내 좋은 거버넌스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사회에 관한 목표는 포스트-2015 개발의제를 위한 고위급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이 제안되었다. UNODC는 안보와 사법의 감시 지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면서 다른 국제기구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포스트-2015 개발의제를 통한 안보와 사법에 대한 책임(Account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이라는 보고서를 제작했다.³⁴⁾ 동 보고서를 통해 안보와 사법을 포스트-2015 개발 기본 틀에서의 개발과 연계시켜야 하는 근거와 관련 용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안보와 사법 관련 활용 가능한 방법들의 통계적 실현가능성도 논의된다.

또한 사법과 안보 관련 통계 및 지표의 생산에 대한 도전과제와 우수사례를 제시하기 위한 노력도 진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UNODC가 UNSD의 기관 간(inter-agency) 방법론적 과제에 협력하면서 이루어졌다. 특별히 UNODC는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분쟁방지, 분쟁 후 평화구축 및 지속적인 평화 장려, 법치, 거버넌스에 관한 기술지원팀 쟁점요약(the technical support team issues brief) 통계노트를 준비하는 기관 간 절차를 이끌었다. 동 문건의 중심내용은 발전목표의 성취를 위한 핵심 방법론적 도구, 평화 측정을 위한 기존(既存) 및 신(新) 지표와 필요 데이터, 법치, 거버넌스이다.

34) 위와 동일

제3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

조 성 현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이행방안

제1절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 (ICCS)의 주요 특성

각 나라에서 생산하는 범죄 통계는 각각의 품질 수준도 다르고 범죄에 대한 기록과 집계 방식도 다르다. 때문에 각 나라들의 범죄통계를 서로 정확하게 비교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제표준 범죄통계 분류체계(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각 나라의 법률상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를 경우, 상호 비교 가능한 공통된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는 직접적으로 범죄와 관련된 행동이나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국제 분류체계에서는 “범죄 행위”로 정의될 수 있는 모든 행위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다. 즉, 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가급적이면 법률용어보다는 일상용어를 사용하되 그 정의를 국가 간 합의를 통해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ICCS는 범죄통계 수집시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어떠한 범죄 관련 데이터에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보통 통계 수집은 경찰, 검찰, 법원, 행정기관 등에서 수집되며 통계수집의 목적이 행정 처리를 위한 기록과 범죄 조사로 나누어져 이들을 통합하는 데에 혼란을 가중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지역내 통계 수집방법이나 관할권 상이한 경우, 데이터 수집 후 이들을 비교하기에는 매우 어려웠다. ICCS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통계 자료 작성 및 공표의 기준을 만들어 국가 간 범죄통계의 일관성과 비교 가능성을 확보할 것이다.

따라서 ICCS에서 제공하는 분류 기준은 데이터의 일관성을 높여 데이터 질의 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여러 나라가 모여 협의를 하고, 그 협의를 통해 모든 범죄행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분류하며,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이다. 각 범죄행위들은 의미 있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분류가 진행될 것이며 이는 정확한 범죄통계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따라서 ICCS의 도입은 범죄예방 분야, 법의 지배를 개선시키고, 그 형사사법체계개혁을 촉진시킬 것이라 기대한다.

제2절 ICCS의 범죄유형 분류방법

ICCS는 법률체계에 따른 분류보다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유형에 따른 분류를 원칙으로 한다. 이때의 분류는 매우 체계화된 형태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1. 분류체계의 조건

ICCS는 범죄의 기준을 범죄행위별 주요 특성(core characteristics)에 근거하여 분류한다. 데이터를 분류할 때는 상호배타성, 포괄성, 통계적 실행가능성의 원칙을 따른다³⁵⁾.

가. 상호배타성 (Mutual Exclusivity)

상호배타성의 의미는 하나의 범죄사건은 하나의 분류체계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ICCS 체계 안에서는 모든 범죄를 중복 없이 단 하나의 분류범주 안에만 분류할 수 있다. 각 분류를 통해 사건이나 행동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해준다.

나. 포괄성 (Exhaustiveness)

포괄성에 따르면 모든 가능한 사건들이 하나 이상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ICCS가 실행가능한 모든 범죄를 포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행 가능한 범위가

35)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 p11-13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모든 나라의 입법 환경, 범죄구성요소들의 특성에 맞추어 범죄를 나열하기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문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범죄의 성립요건이 만족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분류체계 안에 포함시키는 일이다. 다만 ICCS는 범죄분류체계 안에 경미한 교통 범죄 등의 행정범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통계적 실행가능성 (Statistical feasibility)

통계적 실행가능성이란 타인에게 관찰된 범죄 사건이 주어진 정보 안에서 체계에 맞게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분류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어떤 범죄 행위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나온 정보 등을 바탕으로 이미 만들어진 분류범주에 포함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ICCS는 통계적 실행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행위 자체를 범죄활동의 가장 중요한 바탕으로 정의하였으며 실정법에서 정의하는 구성요건 등은 참고정보로 사용하였다. 통계적 실행가능성은 2014년 최종초안이 나온 후 시험 조사를 통해 개선되었다.

2. 분류방법

가. 분류 기준 (Criteria)³⁶⁾

ICCS는 다음과 같은 기준(criteria)에 맞추어 제정되었다. 4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범죄행위나 사건과 관련된 정책범위 (policy area of the act/event)
 - 재산권 보호, 건강권 등
- ② 범행의 목표대상 (target of the act/event)
 - 사람, 재물, 자연환경, 국가 등
- ③ 특정 행위나 범죄행위의 심각성 정도 (seriousness of the act/event)
 - 살인죄, 상해죄 등

36) UNODC,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0, p12-13 재구성

- ④ 범죄사건이나 행위를 저지른 수단 (means by which the act/event is perpetrated)
 - 폭력행사, 협박, 위협 등

나. 분류체계

ICCS는 범죄의 대상,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죄가 일어난 방식, 가해자의 범죄의도,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의 정도에 따른 위계적 분류체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 분류체계는 11개의 대분류(section)와 중분류(division), 소분류(group), 상세분류(classes)의 4단계로 구분되어있다. 1단계 분류, 즉 대분류는 아래와 같이 ICCS 범위내의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다³⁷⁾.

〈표 3-1〉 ICCS의 대분류

대분류 (Level 1 categories)	
1	살인 및 치사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2	상해 및 치상 (Acts causing harm or intending to cause harm to the person)
3	성폭력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4	재물강취 (Acts against property involving violence or threat against a person)
5	재물침해 (Acts against property only)
6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관련 행위 (Acts involving controlled psycho-active substances or other drugs)
7	사기·기망·부패행위 (Acts involving fraud, deception or corruption)
8	공공질서·공무침해 (Acts against public order, authority, and provisions of the State)
9	공안 및 안보위해 (Acts against public safety and state security)
10	환경위해 (Acts against the natural environment)
11	기타 (Other criminal acts not elsewhere classified)

37) ICCS의 대분류내용은 ICCS Version 1(UNODC 2015), pg 23-31 내용을 재구성하였음.

아울러, 이 분류체계는 범죄 집계의 목적 뿐 아니라, 정책과 연계된 정보 제공을 위해 범죄 특성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세분화 변수 (additional disaggregating variables)를 활용하기도 한다. 세부 분류체계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소개한다.

3. 세부 분류

ICCS는 범죄발생의 세부적인 특성을 통계에 포함시킴으로써 통합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예를 들어, 국제살인(International homicide)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특성과 사용한 무기 또는 범죄 동기 등의 변수에 따라 추가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부변수 (“tag”)들은 범죄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코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를 이용하여 특정 범죄에 대한 피해자와 가해자 특성들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국가 범죄 기록 시스템은 이러한 세부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이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르고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코딩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범죄통계수집에 대한 해당 지역 및 국가의 역량에 따라 좌지우지 되곤 한다. ICCS는 국제적인 통계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세부 변수들에 대한 기준을 확립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세부항목을 모두 ICCS안에 포괄하기란 불가능하다. 하지만 ICCS의 도입 후 각국의 실무적 경험을 반영하여 ICCS안에 포함될 세부항목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범죄사건(event), 피해자(victim), 가해자(perpetrator)에 대한 각각의 세분화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3-2〉 ICCS 세부항목분류

사건의 특성 (Event Description)	피해자 특성 (Victim Disaggregations)	가해자 특성 (Perpetrator Disaggregations)	데이터 설명/포괄범위 (Data Descriptions/inclusions)
미수/기수 여부 (Attempted/Completed; At)	피해자 성별 (Sex of victim; SV)	가해자 성별 (Sex of perpetrator; SP)	위협 여부 (threats included; Th)
무기사용여부 (Type of weapon; We)	피해자 연령 (Age of victim; AV)	가해자 연령 (Age of perpetrator; AP)	방조 여부 (Aiding/abetting included; AA)
사건 상황 (the Situational Context; SiC)	피해자 연령 특성 (Age status victim, minor/adult; STV)	가해자 연령 특성 (age status victim, minor/adult; STV)	공범여부 (Accessory/accomplice included; Ac)
지리적 위치 (the Geographical location: Geo)	가해자와의 관계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ViP)	피해자와의 관계 (Victim-perpetrator relationship; ViP)	음모 또는 사전계획 여부 (Conspiracy/planning/preparation included; CP)
날짜 및 시간 (the Date and Time: DaT)	국적 (Citizenship: Cit)	국적 (Citizenship: Cit)	범죄 선동 여부 (incitement to commit crime included)
범행 장소 (the Location of the crime; Lo)	피해자의 지위 (Legal status of victim; LS)	가해자의 지위 (Legal status of perpetrator; LS)	
범죄동기 (the Motive; Mo)	약물여부 (Intoxication status of victim; Int)	약물여부 (Intoxication status of victim; Int)	
사이버범죄 관련여부 (the Cybercrime-related: Cy)	피해자 사업체의 종류 (Economic sector of business victim; ES)	가해자 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상황 (Economic activity status of perpetrator; EASt)	
신고자 (the Reported by; Rep)		가해자의 재범여부 (Recidivist status of perpetrator - Rec)	

출처: ICCS Version 1 pg 21 재구성 (UNODC, 2015)

제3절 ICCS의 이행방안

ICCS를 성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각 나라들은 ICCS의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 맞게 기존의 범죄통계 집계 원자료를 분리하고 재조합해야 한다. ICC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4가지 이행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각 국가내 범죄통계를 담당하는 기관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정보 캠페인 추진, 2) 각국의 데이터 관리자들과 이용자들의 ICCS 안내를 위한 방법론적 틀 개발, 3) 국가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제공, 4) 국제 단계에서의 ICCS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직적, 제도적 틀 확립이다. UNODC는 이러한 이행 계획들은 관련기관들의 추가적인 자원마련에 달려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⁸⁾.

1. 정보공유 홍보 방안 (Information campaign)

ICCS를 이행하기 위한 착수단계에서는 UNODC가 ICCS에 대한 정보를 출력자료와 전자 포맷을 이용하여 널리 알릴 계획이다. UNODC는 ICCS의 국제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자료들을 UN 6개 공용언어로 번역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보공유물은 공식, 비공식 루트를 통해 경찰, 검찰, 법원, 교정기관, 통계청등 범죄통계와 관련 있는 모든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기관뿐만 아니라 ICCS의 보편적 도입을 위해 학계 연구자, 정책입안자, NGO, 언론매체 등 범죄통계 이용자들에게도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 방법론적 지원방안 (Methodological support)

ICCS를 보다 정확하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들을 상대로 방법론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UNODC는 각국의 지역 및 국제 사무국들과 협력하여 각 국가가 국제 분류기준에 맞추어 통계를 분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공할 것이다. 매뉴얼 완성본은 다음과 같이 각 권으로 나누어져 세부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38) 출처: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가. 제 1권 (Volume I)

제 1권에서는 각 국의 기존 범죄통계시스템을 ICCS로 통합시키는 방안이 소개될 것이다. 각 나라의 범죄통계수집은 형사사법 집행기관 등에서 이루어지며 통계를 위한 고유 코드번호를 부여한 뒤 이를 분석한다. UNODC가 준비하는 지원매뉴얼 제 1권에서는 각 국가가 기존에 존재하는 범죄통계에 ICCS의 분류체계를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한 실무적 지원방안을 소개한다.

나. 제 2권 (Volume II)

제 2권에서는 범죄피해조사를 ICCS에 통합시키는 방안이 소개된다. 범죄피해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류체계 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석할지에 대한 실무적 방안을 소개한다.

다. 제 3권 (Volume III): 집계 방식

각 나라들은 범죄를 집계할 때 그 나라 고유의 집계 방식과 획득 가능한 정보의 수준에 맞추어 범죄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다. 예를 들어, 위법행위별, 사안별, 피해자별, 가해자별 등, 기존 범죄통계 집계 원자료의 구성단위가 나라별로 상이하다. 제 3권은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ICCS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특히 ICCS의 기준에 맞추어 범죄 집계에 대한 통합적인 통계 기본틀을 제공하여 일관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소개한다.

라. 제 4권 (Volume IV): ICCS용 코드북

ICCS의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 4권에서는 통합적 코딩 시스템을 설명한다.

위에서 설명한 ICCS 도입관련 4가지지원 매뉴얼이 완성될 시기는 UNODC 내 재원 확보시기에 따라 달려있다. UNODC는 제1권의 완성을 위해 2016년을 목표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

이행 매뉴얼 개발과도 별개로, UNODC는 ICCS의 기술 자문 그룹의 도움을 받아 협의보고서를 개발 중에 있다. 협의보고서는 ICCS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당 콘텐츠와 이행방안에 대한 문의사항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3. 기술적 지원방안

ICCS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지원 필수적이다. UNODC는 e-learning 패키지와 트레이닝을 위한 워크숍 실무경험 공유, 전문가 상담 해당 국가에 맞는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원은 관련 재원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각 지역단계에서 제공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된 지역 단체들 (Eurostat, EU 통계사무국, 지역 개발은행 등)과 UNODC간의 파트너십을 체결할 것이다. 또한, UNODC 본부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안 국가들의 ICCS 도입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4. 조직적, 제도적 프레임워크 구축

향후 ICCS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필수적이고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국제통계분류위원회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the Statistical Commission) 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은 관리자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활동을 인정받아 UNODC가 현재 그 역할을 맡고 있다. 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UNODC는 내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 자문그룹의 설립을 제안하였다. 자문그룹은 국가 통계기관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들과 범죄통계를 이용하는 학계 전문가들, 지역사무소 전문가들 등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될 것이다. 자문그룹 전문가들은 ICCS의 도입을 위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방법론적, 기술적 지원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방법론적 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과 멤버 국가들의 형사사법통계 집계를 위한 ICCS의 초반 도입 부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자문그룹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이메일등을 통한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회의는 적어도 2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³⁹⁾

UNODC는 형사사법시스템 운영과 범죄 동향에 관한 UN 설문조사⁴⁰⁾를 담당하고 있다. ICCS의 최종승인 이후 기존의 설문조사는 ICCS의 분류체계에 맞추어 개편될 것이며 ICCS의 이행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것이다. 개편된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가는 ICCS에 대한 추가적인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매년 데이터 수집을 통해 각국의 ICCS의 구체적 도입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UN 형사사법시스템 운영과 범죄 트렌드 설문조사 수정본은 ICCS 자문그룹과 기술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진행될 것이다. 설문지 수정안은 2016년 통계 수집 기간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구성 중에 있다.

5. 통계 분류 시스템 관리 방안

다른 국제분류시스템과 마찬가지로 ICCS는 도입 이후에도 설문문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로운 범죄 행위의 출현, 범죄관련 정책변화 등이 일어나게 되면 ICCS의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CCS의 현재 체계를 수정할지 여부는 도입단계에서의 성과에 따라 달려있다. 예를 들어 현재 UN에서 수행중인 범죄동향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ICCS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또는 국제통계분류위원회의 전문가 그룹이 지적하는 사항, 기술적 조언, 등에 따라 달려있다. 기술지원그룹은 ICCS의 수정이 필요할 때 이를 검토할 것이며 새로운 수정본이 나오면 그에 대한 콘텐츠와 새 양식을 지원을 할 것이다.

39) 출처: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40) UN-CTS: United Nations Surveys on Crime Trends and the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

제4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김한균·이창진·박소영·백혜원

제4장

아태지역 형사사법 통계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

제1절 제1차 형사사법통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준 및 도구에 관한 워크숍

1. 회의 배경과 목적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및 멕시코 통계 및 지리청(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INEGI)이 2013년 개발한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범죄통계의 질 및 가용성 개선을 위한 로드맵(Road map to improve th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이하 ‘로드맵’)이 같은 해 3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⁴¹⁾ 및 4월 개최된 제22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되었다. 양 위원회는 동 로드맵이 제안하는 여러 활동 중 기술지원 및 사례의 교환을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분야로 보았다. 특히 지역차원에서의 역량강화 활동 이행은 각국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별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UNODC 및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ESCAP)⁴²⁾는 태국사법연구소

41) 로드맵 관련 44차 유엔 통계 위원회 세부사항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unstats.un.org/unsd/class/intercop/expertgroup/2013/AC267-14.PDF>

42) 유엔 ESCAP은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상설기구로 1947년 설립되었으며 경제협력, 개발계획, 식량 및 자원에 관한 사업 등 아태지역 경제사회문제를 다루고 있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 1회 총회가 열린다.

(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⁴³⁾ 및 한국형사정책연구원(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KIC)과 공동으로 2014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제1차 범죄통계 및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지역회의(Regional Meeting on Crime Statistics and Victimization Surveys)를 개최하였다.⁴⁴⁾

본 회의는 UNODC가 이행하는 “아시아 지역의 범죄방지를 위한 통계역량 강화(Strengthening statistical capacity for crime prevention in Asia)”⁴⁵⁾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으며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통계 생산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 장치(organizational arrangements) 및 해당 장치가 행정자료와 범죄피해조사로부터 범죄·형사사법 통계 데이터를 생산해낼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측면에서 각국의 범죄·형사사법 데이터 및 통계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해 도출.

둘째, 각국의 범죄통계 생산 역량 지원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방법론적 도구에 대한 발표 및 논의.

셋째, 범죄피해조사 실행 관련 우수사례 및 기타 범죄·형사사법 대응 관련 조사를 통한 통계적 정보 생산 사례의 교환 도모.

넷째, 범죄 측정과 관련된 방법론적 도전과제 및 범죄피해조사 데이터의 신뢰성(reliability), 타당성(validity) 및 국제적 비교성(comparability) 강화를 위한 도구 논의.

다섯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범죄·형사사법 통계 데이터를 생산, 분석, 배포하는 데 있어 공통으로 취약한 분야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활동 논의.

여섯째, 포스트 2015 지속가능개발의제(Post-2015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⁴⁶⁾가 제시하는 범죄통계 관련 요건에 비추어 범죄통계 인지도 향상 및 관련 예산 증대를 위한 기회 파악.

43) 해당 기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tijthailand.org/main/en>

44) 본 회의에는 다음 국가들의 국가통계기관 및/또는 범죄통계 생산 기관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네 팔, 뉴질랜드, 대한민국,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몰디브,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부탄,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케냐, 태국,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호주, 홍콩.

45) 사업의 배경, 목표 및 예상 성과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un.org/esa/devaccount/projects/2010/10-11AM.html>

46) 세부사항은 다음에서 확인 가능함.

<http://www.un.org/en/ecosoc/about/mdg.shtml>

2. 범죄통계의 도전과제

본 회의에서 교환된 정보 및 국가적 경험의 검토를 토대로 각국의 범죄·형사사법 통계 생산 주관기관 관계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가 논의되었다.

가. 일반적·제도적 취약성

먼저, 증거기반 정책구성(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식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 법률체제와 범죄통계 생산을 위한 자원 부족으로 악화되며, 그 결과 현재 생산되는 범죄통계는 사용될 수 없거나 사용하려는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범죄통계 데이터 수집 기관 간 조정 부족, 다양한 데이터 제공자 간 통합 부족, 데이터 공유의 부족 등의 공통된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노력의 중복 그리고 비교 불가능한 데이터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법집행 기관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집행 기관에 대한 낮은 신뢰는 해당 기관이 생산해내는 범죄·형사사법 통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범통계 생산은 성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낙인 또는 부패나 아동대상 폭력 등 특정 범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낙인 또는 인식부족으로 인해 해당 범죄의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관련 통계의 완결성 및 정확성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범죄통계에 부여되는 제한된 가치는 범죄통계의 제한적 접근가능성 및 사용과도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범죄·형사사법 통계는 사용자와 대중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각국의 국가통계기관은 데이터 수집, 공통기준 적용 실행, 투명한 방식을 통한 통계자료 배포 등에 뚜렷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고급 데이터 생산, 분석, 배포를 가능케 하는 방법론적 기준 및 지침의 부재 또는 부족은 제도적 지식 부족과 직원들의 잦은 이직이라는 문제로 더 심화된다.

회의에 참석한 여러 국가들은 하위 국가 데이터 소스(Sub national data sources)⁴⁷⁾

47) 지역별 새천년개발목표(MDG)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로 가계조사, 인구조사, 건강 및 교육 통계 등을 포함한다.

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효과적 기술적 기반시설의 부족을 또 하나의 과제로 지적했다.

나. 방법론적 문제 및 기술적 역량

양질의 범죄·형사사법 통계의 일관된 수집, 분석, 배포를 위한 공통기준, 지침, 정의 및 방법론의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강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죄통계 및 지표의 생산·평가를 위한 기본 틀의 부족이 문제로 지적된다. 복잡한 형사사법 절차에 걸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 관리, 분석하기 위한 기술적 전문성의 결여도 문제다.

범죄의 기록 및 집계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문제가 존재한다. 즉 경찰에 신고되는 특정 범죄가 비효과적 체계, 인적 오류 또는 경찰의 왜곡된 성과목표로 인해 기록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범죄통계 관련 국제적 절차에 대한 참여 및 인식 부족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수사례 도입이 저해된다.

3. 통계 개선 대상범죄의 분야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매우 선진화된 통계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과 통계 기반시설이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양하게 공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소한 강력범죄 또는 재산범죄 등 주요 범죄 형태에 대한 요약통계(summary statistics)는 제시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들이 행정통계를 보완할 수 있는 범죄피해조사 수행을 위한 역량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은 중요한 한계로 인정되어야 한다.

범죄통계의 전반적 질 향상에 대한 필요 외에도 다음 범죄 분야와 관련된 통계정보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표 4-1〉 통계정보 개선이 필요한 범죄 분야

부패
여성에 대한 폭력/가정폭력/아동에 대한 폭력
인신매매
강력범죄 및 의도적 살인
조직범죄
환경범죄
재산범죄
사이버범죄
마약밀거래

특정 범죄 관련 통계의 가용성 및 질 개선에 더해 다음의 범죄방지 목표방안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추가적 통계정보가 필요하다.

〈표 4-2〉 추가적 통계정보가 필요한 요소

범죄피해자에 관한 정보
범죄의 원인 및 위험요소
형사사법체계, 사회재통합, 재범방지 및 수형제도의 효율성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 및 법치
안전의식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

4. 국가적·국제적 범죄통계 도구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범죄·형사사법 통계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사용가능한 여러 도구 및 자원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회의 중 진행된 논의를 통해 다음의 도구 및 자원이 강조되었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범죄·형사사법에 관한 행정데이터 관리 체계 및 법집행당국 및 사법당국(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의 운영활동.

둘째,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국가적 차원의 범죄피해조사 실행 모범사례 및 이미 출판되어 사용가능한 방법론적 문서 및 교육·훈련 자료.

셋째, UNODC가 관리하는 범죄·형사사법에 관한 연간 데이터를 취합하는 유엔범

죄동향조사(United Nations Crime Trends Survey; UN-CTS)⁴⁸⁾ 및 국가적 차원에서 UN-CTS의 이행을 도모하는 국가 단일 교류창구(Focal Points) 네트워크.

넷째, 범죄·형사사법 데이터의 생산, 수집, 분석, 배포를 위한 통계적 기준을 제공할 예정인 ICCS.

다섯째, 국가 데이터 생산 체계의 개선 및 범죄 동향/패턴을 감시·분석하는 필수적인 도구로서, 각종 범죄 주제에 관한 세계적 연구나 보고서의 생산.

여섯째, ESCAP 통계 위원회(Committee on Statistics)⁴⁹⁾, 유엔 통계 위원회, 범죄 예방 형사사법위원회(CCPCJ)⁵⁰⁾와 같은 범죄 통계화 작업을 주도하는 정부간 기구 및 범죄, 안보, 사법정의에 관한 통계정보 국제회의나 범죄·형사사법의 통계화 작업을 촉진하는 국제적 포럼.

일곱째,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UNODC-INEGI 범죄통계 협력센터와 유엔 아시아·태평양 통계 연구소(UN Statistical Institute for Asia and the Pacific, UNSIAP)⁵¹⁾ 등 범죄·형사사법 통계 분야에서 국가 역량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

5. 향후 진행방안

참가자들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범죄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과 우선사항들을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각각 파악하였다.

가. 국가적 활동

- 1)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요건을 명확히 하며 정보의 수요를 파악하는 첫 번째 단계로서 범죄·형사사법에 관한 이해관계자 분석과 사용자그룹 구성을 시행한다.

48) UN-CTS를 통한 데이터 수집은 매년 진행되며 2015년 UN-CTS 설문지는 2015년 6월 각 회원국에 전달되어 9월에 수집되었다. 연간 보고서는 주요 범죄분야 관한 분석을 제공한다.

49) MDG의 진행상황을 포함한 ESCAP 지역의 주요 사회경제와 환경 트렌드를 추적한다. 또한 사회, 경제, 환경 분석을 위한 필요 데이터 파악과 ESCAP 지역의 국가통계기관의 데이터 생산 및 분석을 위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50) 경제사회이사회 결의 제 1992/1호에 의해 1992년 설치되었다. 범죄예방 및 형사사법 분야에 관한 국제연합의 정책지침을 마련하고 국제연합의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 감독한다.

51) 아태지역 20개국 통계교육센터 1970년 설립되었으며 단기 및 장기 코스의 세미나 및 트레이닝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2) 범죄통계에 관한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기준 및 개념의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 데이터 제공자들 간의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 및 강화한다.
- 3) 국가의 범죄·형사사법 통계 생산자 전체를 포함하는 행정데이터 자료에 대한 점검 또는 질적 평가를 수행한다.
- 4) 데이터 수준 요건, 데이터 생산 제약, 더욱 조직화된 업무 관행의 개선에 대한 각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형사사법 기관과 통계사무소 간의 파견근무를 장려하고 프로그램을 교류한다.
- 5) 최근의 범죄 및 범죄피해조사와 해당 조사들이 국제적 기준과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질적 평가를 수행한다.
- 6) 특히 법집행 및 형사사법 기관들 간의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수요와 이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7) 강력범죄, 여성에 대한 폭력, 부패, 사이버범죄, 법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정책 분야에 대한 국가실행계획에 범죄통계 개발수요를 통합시킨다.
- 8) 범죄통계에 대한 신뢰와 인식을 구축하며, 사용자의 범죄 데이터 및 통계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고 통신 및 데이터 배포 계획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 개선의 선순환을 창출한다.
- 9) UN-CTS를 위한 국가적 단일 교류창구를 확보한다. 단일 교류창구는 공식적인 통계 생산의 책임이 있는 기관이어야 하고 범죄 관련 기관 단위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UNODC와 연계되어야 한다.
- 10)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국가적 포럼과 네트워크를 만들고 데이터 생산자와 분석가 간의 정보의 교환과 상호 이해를 도모한다.
- 11) 범죄통계에 관한 국제적 절차를 보다 긴밀하게 쫓아가며 향후 ICCS와 같은 국제적 기준에 적응한다. 범죄통계의 투명성과 공개 정도를 개선한다.

나. 지역적·국제적 활동

- 1) 범죄통계 생산의 역량과 수요에 대한 국가적 평가를 수행·조정하고, 공통의 목표에 관한 다자협력의 기회를 파악하며 원조국의 지원을 결집시킨다.
- 2) 범죄피해조사, 범죄·형사사법의 행정적 통계에 관한 훈련 강화와 자문활동을

제공하는 한편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포럼을 마련한다.

- 3) 역내 범죄·형사사법 통계의 생산, 분석, 배포를 위한 기술적 역량을 높이는 지역 사무소/거점의 설립을 추진한다.⁵²⁾ ICCS의 이행에 관한 안내서와 지침을 만들고 그의 이행을 위해 각국에 직접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 4) 역내 범죄통계에 관한 2016년 중 국제회의의 개최가능성을 고려한다.
- 5) 법적보호를 받을 권리, 법치, 범죄·형사사법 행정체계⁵³⁾의 유효성 및 효율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방법론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사례의 교류 및 과학적 논의의 방법론적 작업을 수행한다.
- 6)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범죄통계의 인지도와 지명도를 제고하고 국제적 차원에서 추가적 자원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 7)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⁵⁴⁾ 이행을 점검할 수 있는 각국의 역량 등 범죄통계 역량구축의 필요성을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주창한다.
- 8) 부패 및 여성에 대한 폭력을 측정하는 분야 등에 대해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 9)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제적 교류 프로그램을 도모/가능하게 한다.
- 10) 개발 파트너들로부터 제공되는 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지원이 적절히 구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11) 국제적 도구와 틀 및 그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52) 멕시코시티(멕시코)에 설립된 UNODC-INEGI 범죄통계 협력센터(Centre of Excellence on Crime Statistics)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모방할 수 있는 모범사례이다.

53) 태국사법연구소(Thailand Institute of Justice; TIJ)는 이러한 주제들을 탐구하는 포럼을 제공하고 방법론적 기준 마련을 지원했다.

54) 새천년개발목표(MDG) 이후 2016~2030년 새로운 발전목표로서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SDG는 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의 이행과 국내적 차원의 발전목표가 혼합되어 있으며 모든 국가 대상의 지역협력과 다양한 개발개원을 필요로 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도 중요한 참여 주체가 된다.

제2절 ICCS 이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1. 회의 배경과 목적

UNODC의 주도로 개발된 ICCS가 2015년 3월 개최된 제46차 유엔 통계 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 및 같은 해 5월에 개최된 제24차 유엔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Justice)에 의해 승인되었다. ICCS에 대한 더욱 종합적이고 상세한 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UNODC는 상이한 법체계 영역들을 망라하여 다수의 국제적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공식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⁵⁵⁾ 해당 회의는, 관련 분야에 관한 향후 UNODC의 활동에 대해 적절한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였다. 회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생산을 위한 ICCS의 이행 및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신고의 영향을 논의한다.

둘째, ICCS 이행에 대한 각국 실천 계획(national work plan)의 구성을 위해 구성요소 및 주요 도전과제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다.

셋째, 기존의 각국 역량에 대한 평가 도구의 개발 및 ICCS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조건을 논의한다.

2. ICCS 이행의 의미와 영향

가. 데이터 생산 차원의 이행의 의미와 영향

데이터 생산 차원에서 ICCS 이행을 위한 다수의 조건들이 논의되었다. 참가자들은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의 변화는 경찰이나 법원 같은 데이터 생산자들에게 지나친 비용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데이터 기록 단계에서 변화를 이행하도록

55) UNODC가 회의를 주최하였고, 정부, 범죄피해, 공공안보 및 사법정의에 관한 UNODC-INEGI 통계정보 협력센터(UNODC-INEGI Centre of Excellence for Statistical Information)가 후원하였으며 UNODC 소속 직원 외 전세계 13개국에서 17명이 참석하였다: 남아프리카, 네덜란드, 대한민국, 독일, 멕시코, 미국, 스위스, 에콰도르, 이탈리아, 인도, 칠레, 케냐, 프랑스, CoE, OAS, Eurostat

하는 강력한 동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데이터 생산자들은 대개 긴 역사와 고유의 정체성에 따라 특수성과 독립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도입할 때에도 이러한 점들이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변화가 수용되기 이전에, ICCS에 따른 국가적 통계체계 변화의 이점에 대한 인식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이행을 위한 훈련 절차들이 필요한데, 이제까지 관련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가들에 ICCS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ICCS를 어떻게 지역적으로 확산하고 이행할지에 관해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각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초기 도구로서 유엔 범죄동향 조사(UN Crime Trends Survey, UN-CTS)가 있으며 이는 전세계를 아우르는 규격화된 도구로서 향후 ICCS에 합치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ICCS의 번역 또한 초기에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강조되었으며, 공식적인 번역의 제공 및 각국의 ICCS 번역에 대한 지원이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첫째, 각국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둘째, ICCS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각국에 ICCS 이행으로 인한 이점을 소개하고, ICCS의 중요성 및 분류의 이행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변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이러한 분류는 비교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는 한편, 상호 협력에 관한 토대 및 통일된 구조라는 신뢰를 구축하는 등 그 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ICCS가 이해관계자들의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의 추적(tracking crime to fight crime)”을 지원할 수 있다.

범죄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s)⁵⁶⁾는 ICCS 이행의 중요한 도구이다. 범죄피해조사에 관한 세계적 기준이 지금까지 부재했기 때문에, ICCS와 합치하는 각국의 조사를 설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각국의 조사 설계를 바꾸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큰 도전과제일 것이고, 각국이 ICCS를 준수할 준비가 되어있는 정도에 관한 지표를 담은 국가별 조사 절차의 기록을 통해 “모범사례”를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56) UNODC에서 국가범죄피해조사를 위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제공, 국가 간 범죄피해데이터 비교가능성 향상, 조사 방향/방법/분석/결과보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이행의 의미와 영향

일치성/합치성 평가표(Correspondence/convergence tables)⁵⁷⁾⁵⁸⁾는 ICCS의 실질적 이행에 있어 필수적 도구임이 확인되었고, 해당 평가표는 ICCS 이행시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운용됨으로써 각국 입법상황에 근거한 국가별 데이터 수집 및 행동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ICCS와 정확한 일치를 담보해야 한다. 일치성 평가표(Correspondence tables)는 데이터 생산자가 데이터 기록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ICCS에 정의된 공통기준에 가깝게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 기록 차원에서 데이터 수집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일치성 평가를 통해 다수의 사례에서 부차적(이차적) 데이터를 ICCS 틀에 연결시킴으로써, 이전의 경우 보다 더욱 다양한 범주의 범죄유형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메타 데이터(metadata)의 수집은 ICCS 범주에 의해 (재)분류된 데이터를 강화하고, 보다 풍부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배경상황적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국 내부 및 국가 간의 범죄 분류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인지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수집된 메타 데이터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 및 실제 데이터 해석에 미치는 효과, 그러한 차이점을 계량화하는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ICCS가 수집을 목표로 하는 메타 데이터의 파악/우선순위 설정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한 점진적/단계적 절차가 제안되었다. 우선 얼마나 많은 수의 국가들이 현 상황에서 메타 데이터를 포함하는 ICCS의 이행을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ICCS 이행과 관련된 도전과제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ICCS와 관련하여 융통성의 인정은 가능한 한 ICCS 분류 기준에 합치되도록 가급적 제한되어야 한다. 메타 데이터는 이러한 정의 영역 밖의 데이터, 특히 추정치가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포착하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ICCS 이행을 지원 및 지도하는 지역적·국가적·국제적 기구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

57) 유엔 통계국(UNSD)에서 제공하는 일치성 평가표(correspondence tables)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unstats.un.org/unsd/cr/registry/regot.asp?Lg=1>

58) 유엔 통계국(UNSD)에서 제공하는 합치성 평가표(convergence tables)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unstats.un.org/unsd/trade/conversions/HS%20Correlation%20and%20Conversion%20tables.htm>

었다. 유럽통계청(The Statistical Off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⁵⁹⁾이나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OAS)⁶⁰⁾와 같은 지역 기구들은 각 지역에서의 ICCS 이행에 있어서, 지역 차원의 지원을 보여주는 동시에 공동의 이익 및 목표 기반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해당 기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 데이터 생산자들 간의 결속을 실현·장려할 수 있다. Eurostat은 ICCS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향후 공식적인 방법으로 승인할 것이다.

3. 각국 실천 계획의 요건

“범죄 대응을 위한 범죄의 추적” 개념이 ICCS 보급에 관한 세션에서 재차 논의되었다. 특히 정책적 목적의 비교 가능한 통계의 마련이라는 ICCS의 장점 및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 캠페인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캠페인은 ICCS 이행에 있어서 중대한 제약이 되는 자원의 유치 및 변화를 경계하는 당국과 정치인들과의 전략적 협력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가 단일 교류창구(national focal point)의 지정은, 통계강화의 측면에서 중요한 이행 단계로 명시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별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각국 평가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작업반의 구성을 목적으로, 내무부, 사법부, 검찰, 법원, 경찰, 교도소, 교정부서 등을 포함하는 모든 국내 당국의 성과 확산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평가를 위한 UN-CTS의 사용이 고려되었다. 또한 각국이 처한 상황에 따른 구분의 중요성이 논의되었다. 각 국가들 중 일부는 현재 자국의 기록 체계를 ICCS에 부합시키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변화에 그치고자 하는 반면, 다른 일부 국가들은 자국의 기록 체계를 처음부터 새로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ICCS를 전면적 체계 마련의 기초로 사용코자 하기 때문이다.

UNODC 및 Eurostat, OAS 와 같은 지역기구들의 참여가 재차 강조되었다. 이들이 관련 지침을 제공하고 정의 개념과 집계 규칙에 관한 쟁점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형법에 기초한 범죄통계가 ICCS에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평가표의 필요성,

59) 유럽연합 통계업무 담당부서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발 분야에 걸쳐 통계자료의 수집과 발간을 책임지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에 위치하고 있다.

60) 아메리카 지역의 평화와 정의의 질서 달성, 각국의 유대와 상호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1951년 설립되었다.

코드체계의 개발 및 훈련이 특히 강조되었다. 실천 계획과 관련해서, UNODC는 각국의 ICCS 이행 전략 및 작업 계획에 관한 사례의 교류를 돕고, 각국의 작업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부분/요소에 관한 지시사항을 제공하는 방안이 것이 제안되었다.

4. 이행을 위한 역량과 조건

UNODC는 각국 데이터 제공에 관해, 그 특성으로 인해 관련 최소 조건을 결정할 수 없고 향후 어떠한 요건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범죄·형사사법에 관한 세계적 데이터 수집에 대하여 응답자의 대략 50퍼센트 정도만이 CTS를 위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제안되었다. 주요 담당자들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어떠한 정보의 손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별 문서화 작업 및 훈련 설명서들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무응답자를 참여하게끔 하고 그들의 제한적인 자원 제공으로 해당 체계가 무력해지지 않도록 무응답자들에게 한해서 주요 지표들을 요청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앞서 기술된 최적의 기본 틀(optimal framework)은 단기적으로는 CTS 데이터 수집에 참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기본 틀이 부족한 국가의 경우 단일교류창구나 기존의 역량을 활용해 관련 데이터를 신고할 수 있다.

더 나아가 CTS의 유용성을 높이고 CTS의 ICCS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CTS 설문지가 검토될 필요도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찰 공무원과 같이 데이터 수집에 관여하는 관계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훈련을 통해, 신고된 데이터에서 목격되는 불일치를 줄이고 데이터 손실의 발생빈도를 낮추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여성대상 폭력의 기록에 관한 이탈리아의 경우처럼, 시범 연구를 통해 그러한 비(非) 통계 전문가에 대한 전반적 훈련의 이행으로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각국의 역량이 개선되면서, Eurostat에 의해 수행되었던 공식통계를 위한 업무규범 준수 절차의 경우처럼,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상호 검토 절차(peer-review procedure)가 확립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각국의 역량 및 가용 자원에 따라, 통계 자료를 제한적으로 신고하거나 혹은 ICCS를 완벽히 준수하는 수준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다 광범위하게 국가 간 비교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제적 지원

가. 이행 설명서

각국의 사정에 따른 ICCS의 이행 방법에 관한 추가적 지침을 제공하는 이행 설명서가 유용하고 주요한 사항으로 고려되었다. ICCS의 이행 설명서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들에 관해서, 크게 다음의 3가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각국의 데이터를 ICCS 분류 범위로 성과 확산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 위한 실제 사례가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용어와 개념에 대한 설명과 관련하여 해당 설명서가 추가적 설명을 요하는 특정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설명을 담을 수 있으며, 셋째, 각 사안에 따라 사용된 위치, 시간, 동기 등을 세분화(disaggregation)하고 특정 범죄의 경우에는 사용된 무기의 종류에 따라 세분화하는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대다수의 경우, 새로 수집되어야 하는 대상에 관한 문화적 변화의 고려가 중요하다.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을 통해 데이터를 세분화하여 수집하는 것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한다.

설명서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다른 분야들로는, 형법상 1개 이상의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의 범죄행위의 건수 계산, 범죄의 시간적 연속성이 깨진 경우에 관한 지침, 특정 범죄에 관하여 더욱 상세한 특성들을 수집할 수 있는지의 문제, 즉 각국이 원하는 경우 ICCS 에서 제공하는 기준보다 더 상세화하여 범죄를 분류하는 것에 관한 정보가 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의 적용에는 시간과 자원에 따른 ICCS 발전 방향 및 방법과 이의 행사에 있어서 각국의 협력 방안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한다.

각 부문의 이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서에서 사례 연구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설명서 개발 과정에 있어서 2~3개 지원국(volunteer countries)들은, 시범적 성과 확산 활동(pilot mapping exercise)을 통해 설명서상의 성과 확산을 실증하는 예시 및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을 보여줄 수 있다. 발생 가능한 도전과제들을 직면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범대상이 될 국가들은 해당 국가의 범죄행위 통계 전체를 ICCS 틀에 맞추어 성과 확산하거나 혹은 ICCS의 특정 부문에 한해서만 제공을 지원할 수도 있다. 이는 지원국들의 자발적 참여를 보다 순조롭게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한 ICCS의 번역 작업은 초기부터 비영어권 국가들을 ICCS 체제에 포함시키는 데에 중요할 것이다.

설명서의 개요는 주요 주제들을 포함하게 된다. 해당 설명서는 보다 많은 수의 국가들로부터 시범적 결과 및 피드백과 조언을 반영해야 한다. 향후 작성될 예정인 설명서 초안은, 모든 이해당사국들에 공유되고 이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통합시키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설명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각기 다른 3가지 유형의 쟁점들이 있다. 바로 방법론적 쟁점, 데이터 쟁점, 그리고 사용자 쟁점이 그것이다.

국제기구 또한 설명서의 제작 및 이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urostat 과의 공동 설명서 작성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ICCS 설명서를 지역적 구성단위에 따라 보충하고 EU 차원의 주요한 지역적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기술적 지원 활동 및 대상

본 세션을 통해 참가자들이 ICCS에 부합하게 데이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두 가지 기술적 지원 분야를 규명하였다. 첫째, 필수적 도구에 상당하는 훈련을 통해 자원이 부족한 참가자들을 도와서 ICCS 규정에 따라 데이터를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모든 참가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험, 지식 및 기술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지원해야 한다. 해당 두 가지 분야는 전자적 수단 혹은 개별 회의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ICCS 기준에 부합하는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도 이행될 수 있다. 더 나아가 ICCS 기준에 대한 데이터 평가와 확인을 위한 과정은 데이터의 질을 높이고, 모든 지원 계획을 국가적·지역적·국제적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사업에 자원을 제공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고, 이는 시혜적 기부(philanthropic donors), 쌍무적 계약, 지역적 혹은 국제적 펀드의 조성을 포함한다. 범죄·형사사법 데이터의 일관성 있는 수집, 분석 및 신고 등의 형사사법 활동에 대한 자금 제공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개별책임인 반면, UNODC는 공여자와 수혜자(donors and recipients)간의 재정적 성과 확산(financial mapping)을 통해서 그러한 각국의 노력들을 조직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모든 기술적 지원 활동, 훈련 활동 및 경험의 교류는 각 수요에 따라 충족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초반에는 ICCS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노력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훈련·지식 공유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6. ICCS 유지를 위한 제도적·구조적 틀

구조적·제도적 틀은 다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될 것이 제안되었다. 첫째는, UN-CTS이고 둘째는, 기술고문단(Technical Advisory Group, TAG)⁶¹⁾과 지역기구들이다. UN-CTS와 관련하여, CTS 2016⁶²⁾의 검토는 2015년 중반부터 2016년 초에 걸쳐 계획되었으며, 이후 전문가그룹회의(Expert Group Meeting, EGM)는 개정 UN-CTS를 위한 최종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CTS 2016은 ICCS 정의와 일치하는 최초의 데이터 수집 도구이자 가장 중대한 범죄에 대한 인식표가 될 것이다. 게다가, CTS 2016은 2016년 3월에 유엔 통계위원회(United Nations Statistical Commission)⁶³⁾에 의해 채택될 예정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지표를 고려할 것이다.

CTS 개정 절차와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열린 전문가 자문회의의 참가자들은 해당 법제에 대해 계획된 변화와 관련하여 조언 및 비평을 제공하게 된다. 현재의 CTS의 특정 구성요소들은 해당 요소의 품질이나 범위의 한계로 인해 향후 CTS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면 일부 새로운 범죄행위들이 관련성에 기초하여 새롭게 CTS에 포함될 것이다. 한편, 핵심/보충 체계의 사용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핵심 지표는 연단위로 수집하고 보충 지표는 반년 혹은 여러 해에 걸쳐 수집함으로써, 응답 국가들의 신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TAG는 ICCS 이행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어 이행 설명서, CTS 개정, 결합범죄의 분류에 관한 기술적 사항, 범죄 조직의 범행수법(modus operandi), 전자 플랫폼 등에 대해 조언을 제공할 예정이다. TAG의 모든 구성원들은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각기 다른 지역, 제도, 법적 전통의 균형을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G의 구성원들은 자국에서의 ICCS 이행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ICCS를 준수하는 범죄·형사사

61) ICCS의 유지를 위한 실질적 조언을 제공한다.

62) UN-CTS 2016은 UN-CTS의 검토, ICCS에 관한 지식과 인지도 홍보, 매뉴얼 적용, 국제적 기본 틀 설립, 기술적 지원을 위한 전략 개발, ICCS 적용을 위한 회원국의 역량평가 등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63) 인구, 보건, 소득, 무역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통계적 지원을 결정하고 관련 기준을 설정한다.

법통계의 보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기구의 역할이 중요하게 강조되었다. 유럽 연합(European Union)과 같은 지역 기구에 의한 ICCS 및 ICCS 이행 요건의 공식적인 승인(endorsement)은, 역내 국가들의 ICCS 이행을 장려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이다.

제3절 한국범죄분류 개발 및 이행지원 관련 협의회

1. 회의 개요

국제범죄분류(ICCS)가 국제표준분류로 채택되어 각국에 이행권고됨에 따른 한국표준범죄분류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6일, 통계청의 주재로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통계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 형통단 및 총 17인이 참석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ICCS기반 한국범죄분류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동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2. 참석 기관의 주요 요지

가. 통계청

통계청은 본 협의회를 통해 한국범죄분류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15년 3월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국제범죄분류(ICCS)를 이행하여 한국범죄분류를 개발적용함으로써 범죄통계의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되는 범죄통계의 기준과 분류를 통일함으로써 통계자료의 일관성 및 정책 활용성의 제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ICCS를 기반으로 한 한국범죄분류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① 범죄통계 작성 현실과 수요를 감안하여 법적 강제력이 없는 '일반분류'로 제정 ② 죄명코드개편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반형성 과정을 거쳐 점진적 표준분류화 추진 ③ 통계청 주관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분류초안을 마련하고 코드연계 및 시험적용을 거쳐 한국범죄분류를 일반분류로 제정하는 것이다. 통계청의 향후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⁶⁴⁾.

〈표 4-3〉 한국범죄분류개발을 위한 통계청의 추진계획

년도	과제	참여기관
2016	개발연구 및 한국범죄분류초안작성	통계청(기준과, 개발원), 형사정책연구원, 치안정책연구소
2017	수정보완, 코드 및 시계열 연계	
2018	통계작성, 시험적용	대검찰청, 경찰청 등
2019	한국범죄분류(일반분류) 제정	통계청

나. 대검찰청 및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대검찰청과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이하 ‘형통단’)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의 범죄통계는 죄명위주로 되어있어 이를 행위양태를 위주로 한 국제범죄분류에 맞출 수 없다.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의 원표를 바꾸어야 하나 2009년부터 제안된(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신원표를 아직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범죄분류에 맞는 또 다른 원표를 만들어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통계청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한 기존 범죄통계의 죄명을 재조합하여 국제범죄분류에 맞추는 작업은 현재 형통단에서 진행하고 있다.

다. 경찰청

경찰청은 원표를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원표 입력을 담당하는 일선 경찰의 업무 부담도 고려해야하는 점을 강조하였다. 원표입력만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 없는 관계로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이 원표를 입력하고 이는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정확한 원표입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다 복잡한 원표로 전환되는 것은 일선에 업무 부담을 가중하면서 원표입력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오게 될 것이라 표명하였다.

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현재 범죄통계와 원표를 분석하여 국제범죄분류에 어떤 방식으로 맞출지 탐색하는 작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표준분류화 작업을 진행하고

64) 본 내용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통계청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자 하는 시도는 좋으나, 국제범죄분류에 완전히 부합되는 한국범죄분류를 개발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는 매우 요원한 일임을 언급하였다. 또한 2016년에서 2017년까지 통계청, 치안정책연구소,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한국범죄분류의 초석을 닦는 연구의 참여여부는 통계청의 세부 계획이 나온 이후 연구원내 의견을 모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다.

3. ICCS의 이행지원

제46차 유엔통계위원회에 참석한 한국대표단은 아시아 지역 국제범죄분류 이행지원 파트너 역할 수행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아시아 지역 ICCS보급을 위한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아시아지역협력센터 설립추진계획(2015년 9월)을 통계청과 협의하였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지역협력센터 설립추진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단독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센터의 설립에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한국표준분류를 개발하는데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통계청은 한국표준분류조차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내 다른 국가들을 교육·훈련하는 일은 시기상조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추진 중인 아시아지역협력센터의 설립에 관해서 다른 기관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표명하였다.

제5장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결론

김한균

제5장

결론

1.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의 관점에서 본 ICCS의 국내적 활용방안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1-2015) 이후 2016-2030년 새로운 발전목표(이른바 Post-2015 개발의제)로서 2015년 9월25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⁶⁵⁾

MDGs는 개발도상국가와 저개발국가들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개발 지원을 목표로 상정하였다면,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공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표를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빈곤과 질병뿐만 아니라 불평등 해소와 환경보호까지 아우른다.

새천년발전목표 2001-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2030년
8개 Goal, 21개 Target 개발도상국 대상목표	17개 Goal, 169개 Target 모든 국가의 보편적 목표
1. 극심한 빈곤 및 기아퇴치	1. 빈곤퇴치(End poverty in all its forms everywhere) 2. 기아 해소, 식량안전 달성(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
4. 유아사망률감소 5. 모성보건 증진 6. 에이즈, 말라리아 질병퇴치	3. 보건증진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2. 보편적 초등교육 실현	4. 교육보장 및 평생학습 향상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3. 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역량 강화 (Achieve gender equality and empower all women and girls)

65)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post2015/transformingourworld>

새천년발전목표 2001-2015년	지속가능발전목표 2016-2030년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6. 물과 위생 제공 및 관리 (Ensure availability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water and sanitation for all) 7. 에너지 보급 (Ensure access to affordable, reliable, sustainable and modern energy for all) 11. 지속가능도시 구축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Ensur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13. 기후변화 대응 (Take urgent action to combat climate change and its impacts) 14. 해양 및 해양자원의 지속가능이용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s, seas and marine resourc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8.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 (Promote sustained, inclusive an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ull and productive employment and decent work for all)
	9. 인프라구축 및 산업화 확대 (Build resilient infrastructure,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industrialization and foster innovation)
	10. 불평등 해소 (Reduce inequality within and among countries)
	15. 육상생태계 보호와 지속가능이용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6. 평화로운 사회증진 및 제도구축 (Promote peaceful and inclusive societ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ovide access to justice for all and build effective, accountable and inclusive institutions at all levels)
8. 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17.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Strengthen the means of implementation and revitalize the global partnershi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따라서 MDGs는 선진국이 중심이 된 공적원조 (ODA)를 기반으로 이행하는 형태인데 비해, SDGs는 모든 국가 대상의 지역협력과 다양한 개발재원을 필요로 하며,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민간도 중요한 참여주체가 된다.

또한 SDGs는 국제개발협력차원에서의 이행과 국내적 차원의 발전목표가 함께 제시된다. 그러므로 첫째, 대외적·대내적 이행체계를 구분하되, 통합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주요 목표와 세부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른 계획이 필요하다. 셋째, SDGs 이행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SDGs는

각 국의 이행책임 실행전략과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점검을 중시하므로, 국제적·국내적 이행을 측정할 지표체계(2016년 3월 채택예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요청된다.

따라서,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지원과 국내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각 세부 목표별 그리고 해당지표에 따른 자료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⁶⁶⁾

목표 (Goal)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
1. 빈곤종식 (End Poverty)	(1a) 1일 소득 1.25달러 미만 인구 근절과 2015년 국가빈곤선 미만 인구 비율을 x% 감소
	(1b) 토지, 재산 및 기타 자산에 보장된 권리에 대한 남녀, 커뮤니티, 기업의 비율을 x% 증가
	(1c) 빈곤층 및 사회보장시스템 대상 취약층을 x%까지 관리
	(1d) 회복성(resilience) 구축 및 자연재해 사망자 x% 감소
2. 소녀·여성의 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2a)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방지 및 근절
	(2b) 아동 결혼 근절
	(2c) 재산소유 및 상속, 계약체결, 사업등록 및 은행계좌 개설에 대한 여성의 동일한 권리 보장
	(2d) 정치적, 경제적, 공적 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3.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3a) 취학전(pre-primary) 교육의 시작 및 완료가 가능한 아동 비율 x% 증가
	(3b) 모든 아동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저 교육 수준을 충족하도록 읽기, 쓰기, 계산을 할 수 있는 초등교육 완성을 보장
	(3c)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아동의 중등교육 이수를 보장하고, 인지 및 측정 가능한 학습효과를 달성하는 청소년 비율을 증가
	(3d)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능력과 기술을 갖춘 청년층 및 성인 남녀의 수를 x% 증가
4. 건강한 생활 보장 (Ensure Healthy Lives)	(4a) 예방 가능한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을 근절
	(4b) 아동, 청소년, 위험환경 성인 및 노인의 예방접종 비율 x% 증가
	(4c) 모성사망 비율을 10만명 당 x명으로 감소
	(4d) 보편적 성보건, 모자보건과 권리 보장
5. 식량안보 및 양질의 영양공급 보장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4e)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열대병 및 주요 비전염성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한 부담 감소
	(5a) 기아 종료와 모든 인구의 충분, 안전하며, 구입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권리 보호

66) 통계청, Post-2015 개발의제 선정 진행사항 http://kostat.go.kr/policy/cooperatie/nc_un/3/index.board?bmode=download&bSeq=&aSeq=331008&ord=2

목표 (Goal)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
	(5b) 모든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저해(stunting) x%, 소모성 질환 y%, 빈혈 z% 감소
	(5c) 소작농의 수확량 및 관개(irrigation) 이용의 지속적 증가를 중심으로 농업생산성 x% 증가
	(5d)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담수어업 practice의 수용과 지정 어류(designated fish stock)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재건
	(5e) 수확 후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 x% 감소
6. 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6a) 가정, 학교, 보건센터, 난민캠프에서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6b) 노상배변(open defecation) 근절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위생시설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가정에서의 위생시설 접근성 x% 증가
	(6c) 공급에 맞는 담수 회수(freshwater withdrawals)와 물 효율성을 농업에서 x%, 산업에서 y%, 도시지역에서 z% 증가
	(6d) 모든 지방 및 산업용 폐수는 배출전 재활용 또는 처리

그렇다면, SDGs에서 형사사법 및 형사정책관련 목표는 성평등 달성 및 여아의 역량 강화(목표 5)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롭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구축 (목표 16)이다.

목표 5의 세부목표 중에서는 “여성과 여아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근절”, 그리고 목표 16의 세부목표 중에서는 ① 모든 형태의 폭력과 사망률의 감소, ② 아동학대와 착취 등 모든형태의 아동대상 폭력근절, ③ 국내적 국제적 법치주의 증진과 사법서비스 접근성 보장, ④ 조직범죄 대처와 불법자산환수 강화, ⑤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 감소, ⑥ 폭력방지 및 테러와 범죄 대처역량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과 국가제도 강화가 형사정책적 의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차적으로 살인(치사), 여성아동대상 폭력(성폭력), 부패범죄(증수뢰)에 관하여는 SDG관련 지표에 따른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통계자료가 요청될 것인바, ICCS의 국내적 적용 내지 활용에 있어서 일차적 과제로 삼을 만하다.

2. 살인죄의 분류 적용시안

(1) ICCS 분류체계상 살인 및 치사죄 유형은 고의여부에 따라 고의살인과 과실살인, 기수여부에 따라 고의살인과 고의살인미수로 구분된다. 과실살인은 부주의치사와 그 외의 치사로 구분하고, 다시 부주의치사는 교통치사와 그 외의 부주의치사로 구분한다. 고의 또는 과실의 살인 또는 치사 외에 안락사, 영아살해, 무장분쟁시 살해 및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된다.⁶⁷⁾

대분류 (level 1)	중분류(level 2)	소분류(level 3)	세분류(level 4)
살인 및 치사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0101 고의살인 intentional homicide		
	0102 고의살인미수 attempted intentional homicide		
	0103 과실살인 non-intentional homicide	01031 부주의치사-외 치사 non-negligent manslaughter	
		01032 부주의치사 negligent manslaughter	010321 교통살인 vehicular homicide 010322 교통살인-외 부주의치사 non-vehicular homicide
	0104 자살교사방조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41 자살방조 assisting suicide 01049 기타 자살방조교사 other acts of assisting or instigating suicide	
	0105 안락사 euthanasia		
	0106 불법영아살해 illegal feticide		
	0107 무장분쟁관련 살해 unlawful killing associated with armed conflict		
	0109 기타 살인 및 치사 other acts leading to death or intending to cause death		

67)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 2015, 33-36면

(2) ICCS 분류와 경찰 범죄통계 분류

현행 경찰 범죄통계 범죄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살인죄 관련 ICCS 해당 분류기준에 따라 재조합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ICCS			범죄통계
0101	고의살인		살인 존속살해
0102	고의살인미수		살인미수 영아살해미수 존속살해미수 촉탁승락살인미수 자살교수방조미수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미수
0103	과실살인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체포감금치사상 존속체포감금치사상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치사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폭발성물건파열치사 가스등방출치사 강도치사 해상강도치사
	01031	부주의치사의 치사	
	01032	부주의치사	
	010321	교통살인	위험운전치사상
	010322	교통살인의 부주의치사	
0104	자살교사방조		자살교사방조
	01041	자살방조	
	01049	기타 자살방조교사	촉탁승락살인
0105	안락사		촉탁승락살인
0106	불법영아살해		영아살해
0107	무장분쟁관련 살해		
0109	기타 살인 및 치사		위계위력촉탁승락살인 피약취자피유인자피매매자살해 강간살인 유사강간살인 강도살인 해상강도살인

다만, 일응 과실살인의 유형(0103)으로 분류한 상해치사, 존속상해치사, 폭행치사, 특수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강간치사, 유사강간치사, 강도치사, 해상강도치사의 경우 ‘중한 폭행으로 인한 치사(serious assault leading to death)’로 볼 경우⁶⁸⁾에는 과실살인 유형이 아니라 고의살인 유형(0101)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 이는 우리 형법의 고의-과실 요건과 영미법상의 고의적(intentional), 의도적 (voluntary) 요건의 차이, 우리 형법의 살인-치사 요건과 영미법상의 모살(murder)-고살(manslaughter) 요건의 차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부분이다.

3. 성폭력범죄의 분류 적용시안

(1) ICCS 분류체계상 성적 침해범죄는 성폭력, 성적 착취, 기타 성폭력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성폭력은 강간, 성폭행, 기타 성폭력으로, 성적 착취는 일반 성적 착취와 아동대상 성적 착취로 다시 구분된다.⁶⁹⁾

대분류 (level 1)	중분류(level 2)	소분류(level 3)	세분류(level 4)
성적 침해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0301 성폭력 sexual violence	03011 강간 rape	030111 폭행강간 rape with force 030112 폭행 외 강간 rape without force 030113 의제강간 statutory rape 030114 기타 강간 other rape
		03012 성폭행 sexual assault	030121 신체적 성폭행 physical sexual assault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non-physical sexual assault 030129 기타 성폭행 other sexual assault not elsewhere classified
		03019 기타 성폭력 other acts of sexual violence	

68) ICCS 체계에서 중한 폭행으로 인한 치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망 또는 중상해의 결과의 개연성을 인식하면서 행한 폭행으로 인한 살해결과”(unlawful death due to an assault committed with the knowledge that it was probable that death or serious injury would occur)

69)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 2015, 50-53면

대분류 (level 1)	중분류(level 2)	소분류(level 3)	세분류(level 4)
	0302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03021 성인대상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adults	
		03022 아동대상 성적 착취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030221 아동 음란물 child pornography 030222 아동 성매매 child prostitution 030223 아동에 대한 성적접근 sexual grooming of children 030229 기타 아동대상 성적착취 other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03029 기타 성적 착취 other acts of sexual exploitation	
	0309 기타 성적 침해 other injurious acts of a sexual nature		

(2) ICCS 분류와 경찰 범죄통계 분류

현행 경찰 범죄통계 범죄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 관련 ICCS 해당 분류 기준에 따라 재조합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ICCS			범죄통계
0301		성폭력	
	03011	강간	
			강간 상습강간 13세미만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강간 청소년강간 특수강간 주거침입강간 특수절도강간 특수강도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간,간음) 유사강간 상습유사강간 주거침입유사강간 특수절도유사강간 특수강도유사강간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유사강간,간음)
	030111	폭행강간	

ICCS			범죄통계
	030112	폭행 외 강간	준강간 상습준강간 13세미만간음 미성년자간음 업무상위력간음 장애인간음 청소년간음 준유사강간 상습준유사강간
	030113	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030119	기타 강간	약취유인(간음) 인신매매(간음)
	03012	성폭행	
	030121	신체적 성폭행	강제추행 상습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상습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친족관계추행 장애인강제추행 청소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13세미성년자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특수강제추행 주거침입강제추행 특수절도강제추행 특수강도강제추행 아동학대처벌법위반(상습강제추행) 유사성행위
	030122	비신체적 성폭행	
	030129	강간 이외 성폭행	미성년자의제추행
	03019	기타 성폭력	
	0302	성적 착취	
	03021	성인대상 성적 착취	약취유인(추행) 약취유인(성매매) 인신매매(추행)
	03022	아동대상 성적 착취	
	030221	아동음란물	음화반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음란물유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제작배포)

ICCS				범죄통계
	030222	아동성매매		성매매알선행위처벌법(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성보호법(매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알선영업행위등)
	030223	아동에 대한 성적 접근		
	030229	기타 아동대상 성적착취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요행위등)
	03029	기타 성적착취		혼인빙자간음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도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0309		기타 성적 침해		공연음란 음행매개

다만, ICCS 체계상의 강간(rape) 유형(03011) 개념은 - 행위유형에 근거한 체계임을 감안하더라도 - 우리 실정형법상의 개념과 불일치한다. 즉 ICCS 체계에서 강간은 “유효한 동의 없이 또는 협박, 강제력, 기망, 강요, 위력, 위계, 술 또는 약물이용, 우월한 지위 또는 취약한 입장을 이용하거나, 이익제공을 약속하여 얻어낸 동의에 기한 성적 삽입행위⁷⁰⁾”로 정의된다. 여기서 성적 삽입은 성기, 항문, 구강에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한 경우를 뜻한다. 이는 우리 실정법이 강간, 유사강간 또는 유사성교, 강제추행을 구별하는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비신체적 성폭행(030122) 유형에는 성희롱(sexual harrassment)가 포함되는데, 우리 실정법상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대상 성희롱을 제외하고는 성희롱은 형사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아동음란물 (030221) 유형에는 아동음란물 소지가 포함되는데, 이는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으로도 처벌대상인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아동음란물에 대한 사회적 비난정도는 문화적 차이가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 실정법상의 해당범죄 건수가 ICCS 체계상의 아동음란물죄 유형에 해당된다고 할 때 우리 범죄현실의 형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현행 실정법에 근거한 범죄통계 분류체계에 행위유형 기준의 통계목적

70) sexual penetration without valid consent or with consent as a result of intimidation, force, fraud, coercion, threat, deception, use of drugs or alcohol, abuse of power or of a position of vulnerability, or the giving or receiving of benefits

범죄분류 국제기준 적용은 필요적절한 범죄유형인 살인범죄나 성폭력범죄에 우선적으로 시도해 봄으로써 그 실효성과 유용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다만 살인죄와 성폭력범죄 두 범죄유형에 대한 ICCS 기준의 적용시도 결과 ICCS상의 개별 범죄행위유형 개념과 현행 실정법상 범죄유형의 차이로 인한 난점이 상당부분 드러난다. 향후 체계적인 연구, 그리고 이를 위한 국내 유관기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3). Report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Statistics and Geography of Mexico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a road map to improve quality and availability of crime statistics at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3.

Note by the Secretary-General (2014). Report of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on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UNODC 2014.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5).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 for Statistical Purposes, Version 1. 2015

Abstract

UN•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earch for Crime Prevention (XI): Studies in Criminal Justice Policy for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IV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n Northeast Asia Region

Kim Han-kyun • Lee Angela Changjin
Cho Sung-hyun • Park So-young • Bek Hye-ueon

In 2009, UNODC began to prepare an internationally standardized system for the classification of crime and developed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for Statistical Purposes (ICCS), which is based on the aspect of behavior rather than the actual laws and regulations. The purpose of ICCS is to enhance policy utilization of statistical analysi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by improving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and consistency of crime statistics. This study aims to find a cooperative plan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statistic field and international and reg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roject,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announced 2015 United Nations ICCS.

Chapter 2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ICCS and introduces the new standard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for the improvement of crime statistics, increased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crime information and aim of analysis improvement for international data collection.

Chapter 3 analyzes the application of ICCS. It introduces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classification method of crime

types and implementation plans.

Chapter 4 investigates the cooperation plan of the Asian-Pacific regional development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It compiles and analyzes the past research of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uch as the 1st Criminal Justice Statistics Development Workshop,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Crimes Expert Advisory Conference, Korean Classification of Crimes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Conference.

연구총서 15-B-06

동북아지역 국제형사사법 통계기준 실행방안 연구

발	행		2015년 12월
발	행	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	행	인	김 진 환
등		록	1990. 3. 20. 제21-143호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		화	(02)575-5282
홈	페 이	지	www.kic.re.kr
정		가	7,000원
인		쇄	경성문화사 (02)786-2999
I	S	B	N 978-89-7366-937-0 93330

연구원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